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 문 위 원 황승기

목 차

제1장 개요

I. 총 괄	1
II. 세입·세출 결산	2
1. 일반회계	2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6
III. 재무제표	18
1. 재정상태표	18
2. 재정운용표	20
3. 순자산변동표	21
IV. 성과보고서	22

제2장 검토의견

I.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4
1. 조세심판원: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등	24
(1)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26
(2) 조세심판 정보화: 전자심판제도 운영 부진	29

(3)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본사업 시행 가능성이 낮은 ISP 수립사업 실시로 인한 예산 낭비	31
(4)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을 일반연구비 (260-01)로 집행	33
2. 대테러센터 운영: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의 방향성 검토 필요	36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심판제도 예산 집행 실적 부진	41
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덩어리규제 발굴 사업등 집행실적 부진	45
(1)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 및 발굴규제 검토·개선·조정 사업 집행 실적 부진	46
(2) 덩어리 규제발굴 정책연구비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51
5. 현안과제 추진 지원: 임시조직의 존속기한 설정 필요	60
6.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 처리 부적정 등	64
(1) 연간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 처리 부적정	67
(2)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미흡	74
7.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중단 예정인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 사업비 편성 후 전액 불용 등	78
(1) 중단 예정인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기능개선 사업비 편성 후 전액 불용	79
(2) 청년DB 가입 및 활용 실적 저조	81
8.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예비비 배정 및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등	86
(1) 국가위원회 구성 사전준비 미흡에 따른 예비비 집행실적 부진	89
(2) 국가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공백 발생	97
9.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예비비 과다배정 후 불용 발생 부적절 등	102

(1) 예비비 과다배정 후 불용 발생 부적절	103
(2) 임시조직의 서울회의실 별도 조성을 위한 예산지출 과다 ·	107
10.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의 운영 장기화 부적절	111
11.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경비 편성 지양 필요 등	117
(1) 설치 근거가 없는 시민사회위원회의 운영 경비 편성 지양 필요	118
(2) 민정실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의 적정성 검토 필요	123

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기관 128

1. 공통: 제도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필요	128
2. 공통: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준수 필요	134
3. 공통: 논문게재료 관리 강화 및 관련 지침 마련 필요	137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채용 확대 필요	141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재정정보시스템 확대 필요	146
6. 한국개발연구원: 수시연구사업비 사업·예산 관리 주의	152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연구사업 외부용역비 집행 주의	159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연구사업 임차료 등 과다집행 주의	163
9. 통일연구원: 연구기획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167
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상경비 집행 효율성 검토 필요	172
11.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사후영향평가센터(세종연구실) 운영 내실화	175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계약관련 법령준수노력 미흡 주의	179
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의	185
14. 산업연구원: 일반사업 구조 조정 검토 필요	188

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괄적인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지급 부적절	195
16. 한국노동연구원: 이월을 통한 자체수입 초과분 직접사용 지양 필요	200
1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일반연구사업과 연구지원사업 통합발주 지양 필요	204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208
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신비 지급 부적절	212
20. 한국환경연구원: 계약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기관 평가 인센티브 사용 지양	216

제1장 개요

I. 총괄

-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재정규모(세출예산현액 순계 기준)는 2022회계연도 재정규모 6,628억 2,700만원 대비 154억 2,200만원 증가한 6,782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6,663억 1,900만원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19억 3,0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6,663억 1,900만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증가 113억 6,200만원에 주로 기인함.
- 2023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119억 3,000만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감소 3억 2,300만원에 기인함.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A)	2023년도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일반회계(a)	650,574	666,319	15,745	2.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b)	12,253	11,930	△323	△2.6
총 재정규모(c=a+b)	662,827	678,249	15,422	2.3

주: 예산현액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I.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2,300만원으로, 2억 8,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주요 수납내역은 관사 전세보증금 반납금 2억 6,500만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이자수입 900만원 등임.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증 감 (B-A)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1	12	12	-	-	1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22	269	269	-	-	247
계	1	12	12	-	-	11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세출결산

1) 총 괄

□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6,646억 8,500만원, 전년도 이월액(5억 5,300만원)과 예비비(10억 8,1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663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3%인 6,418억 7,400만원이 집행되고, 4,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44억원이 불용되었음.

○ 경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지출액의 8.7%인 555억 7,500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되었고, 2.3%인 149억 2,100만원이 기본경비로, 89.0%인 5,713억 7,800만원이 사업비로 각각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이체	예비비				
□ 합계	664,685	664,685	553	1,707 △1,707	-	1,081	666,319	641,874	45	24,400
○ 인건비	57,861	57,861	-	280 △413	-	-	57,728	55,575	-	2,153
○ 기본경비	16,095	16,095	15	924 △971	-	-	16,063	14,921	-	1,143
-기본경비 (대상)	4,738	4,738	-	235 △226	-	-	4,747	4,504	-	244
-기본경비 (비대상)	11,357	11,357	15	689 △746	-	-	11,316	10,417	-	899
○ 사업비	590,729	590,729	538	503 △323	-	1,081	592,528	571,378	45	21,10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인건비 및 기본경비

□ 인건비의 당초 예산액은 578억 6,100만원이고, 전용 등에 따른 감액분 1억 3,300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은 577억 2,800만원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이 중 555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5,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본부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 461억 1,100만원이나,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8,500만원을 전용 감액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예산현액 460억 2,600만원 중 96.6%에 해당하는 444억 5,500만원이 집행되고 15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조세심판원 인건비의 당초 예산액 117억 5,000만원이나, 조세심판원 청년인턴 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4,800만원을 전용 감액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예산현액 117억 200만원 중 95.0%에 해당하는 111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8,2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이체				
□ 인건비	57,861	57,861	-	- △133	-	57,728	55,575	-	2,153
○ 본부 인건비	46,111	46,111	-	- △85	-	46,026	44,455	-	1,571
○ 조세심판원 인건비	11,750	11,750	-	- △48	-	11,702	11,120	-	582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는 당초 예산액 160억 9,500만원, 공직복무관리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한 전용 4,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500만원 등 3,200만원을 감액 반영한 예산현액 160억 6,300만원 중 92.9%에 해당하는 149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4,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본부 기본경비(총액)는 당초 예산액 40억 7,300만원에서, 국무조정실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한 전용 등 3,200만원을 감액 반영한 예산현액 40억 4,100만원 중 94.4%에 해당하는 38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는 당초 예산액 6억 6,500만원에서, 청년인턴 임금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한 전용 등 4,100만원을 증액 반영한 예산현액 7억 600만원 중 97.6%에 해당하는 6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본부 기본경비는 당초 예산액 77억 6,200만원에서, 공직복무 관리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한 전용 등 6,300만원을 감액 반영한 예산현액 76억 9,900만원 중 90.1%에 해당하는 69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5,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는 당초 예산액 35억 9,500만원에서,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한 내역변경 등 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500만원을 증액 반영한 예산현액 36억 1,700만원 중

96.1%에 해당하는 34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이체				
□ 기본경비	16,095	16,095	15	924 △971	-	16,063	14,921	-	1,143
○ 본부 기본경비(총액)	4,073	4,073	-	179 △211	-	4,041	3,815	-	226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665	665	-	56 △15	-	706	689	-	18
○ 본부 기본경비	7,762	7,762	-	563 △627	-	7,699	6,940	-	759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3,595	3,595	15	126 △119	-	3,617	3,477	-	14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주요 사업비

□ 2023년도 주요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5,907억 2,9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3,800만원 및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운영,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 운영 예비비 10억 8,1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한 예산현액 5,925억 2,800만원 중 96.4%인 5,713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일 미도래로 인해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미배정에 따른 불용 등에 의해 211억 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2023회계연도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등	예비비				
□ 합계	590,729	590,729	538	503 △323	1,081	592,528	571,378	45	21,104
○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7031)	6,555	6,555	-	72 △72	-	6,555	6,460	-	95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77	177	-	50 △50	-	177	170	-	7
국정운영 정보화	1,418	1,418	-	-	-	1,418	1,384	-	3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3,414	3,414	-	22 △22	-	3,414	3,378	-	36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1,546	1,546	-	-	-	1,546	1,528	-	18
○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7032)	2,182	2,182	-	4 △4	-	2,182	1,956	-	226
공공기관 갈등관리	380	380	-	-	-	380	377	-	3
대테러센터 운영	886	886	-	4 △4	-	886	832	-	54
인권보호관 지원	373	373	-	-	-	373	263	-	110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543	543	-	-	-	543	484	-	59
○ 규제개혁(7033)	7,963	7,963	220	77 △77	-	8,183	7,057	45	1,08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531	1,531	-	54 △54	-	1,531	1,313	-	218
규제개혁 정보화	802	802	-	-	-	802	784	-	18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5,630	5,630	220	23 △23	-	5,850	4,960	45	844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7035)	21,252	21,252	317	108 △79	1,081	22,679	19,419	-	3,259
현안과제 추진 지원	284	284	-	2 △2	-	284	215	-	69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2,870	2,870	21	22 △22	-	2,891	2,741	-	150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운영	163	163	-	3 △3	-	163	160	-	3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2,994	2,994	-	-	-	2,994	2,966	-	28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등	예비비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8,843	8,843	174	30 △30	-	9,017	7,323	-	1,694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5,724	5,724	122	20 △20	-	5,846	4,879	-	967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374	374	-	31 △2	-	403	391	-	12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운영	-	-	-	-	424	424	245	-	178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 운영	-	-	-	-	657	657	499	-	158
○ 행정지원(7036)	5,840	5,840	-	203 △52	-	5,991	5,615	-	376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235	235	-	-	-	235	234	-	1
내부 정보화	1,675	1,675	-	-	-	1,675	1,667	-	8
공직복무 관리	706	706	-	155 △4	-	857	841	-	16
국무총리 공관관리	400	400	-	-	-	400	386	-	14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801	1,801	-	-	-	1,801	1,494	-	307
조세심판 정보화	283	283	-	-	-	283	278	-	5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40	740	-	48 △48	-	740	715	-	25
○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7037)	1,867	1,867	-	39 △39	-	1,867	1,772	-	95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97	597	-	-	-	597	574	-	23
국회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과의 소통강화	1,270	1,270	-	39 △39	-	1,270	1,198	-	72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8810)	296	296	-	-	-	296	296	-	-
○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 (1500)	544,774	544,774	-	-	-	544,774	528,803	-	15,971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7031)은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으로, 65억 5,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8.6%인 6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사업(7032)은 공공기관 갈등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21억 8,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9.6%인 19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 규제개혁 사업(7033)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및 규제개혁 정보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81억 8,3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6.2%인 70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음.
-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사업(7035)은 현안과제 추진 지원,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26억 7,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5.6%인 194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 행정지원 사업(7036)은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을 위한 비용 집행과 내부정보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59억 9,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3.7%인 56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사업(7037)은 정당 및 시민사회,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8억 6,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4.9%인 17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사업(8810)은 2억 9,600만원의 예산현액을 전액 집행하였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사업(1500)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그 소속 23개 연구기관에 출연을 하는 사업으로, 5,447억 7,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7.1%인 5,28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음.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 2023회계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5,447억 7,4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40억 9,000만원을 합한 5,688억 6,400만원이며 이 중 5,300억 4,200만원이 집행되고 228억 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¹⁾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전년도 이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출연 받은 출연금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기준에 의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사업(1500)의 일반회계 결산기준에 의한 전년도 이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과는 회계처리 주체와 인식기준 측면에서 구분되는 별도의 결산수치임.

〈2023회계연도 출연금예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	예산액		예산 결정 후 증감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유보액)	차년도 이월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예비비	전용액	이용및 이체				
계	544,774	544,774	24,090	-	-	-	568,864	530,042	15,971	22,852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39,291	39,291	3,965	-	-	-	43,256	38,505	1,097	3,654
23개 연구기관	505,483	505,483	20,125	-	-	-	525,608	491,537	14,874	19,19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로 연구과제 수행상 다음연도에 걸쳐 집행되거나 차년도로 과제수행이 순연됨에 따라 발생하였고, 159억 7,100만원은 2023년도 인건비 등 집행잔액 예상액을 고려하여 연말 미교부 처리함. 이월액 228억 5,200만원은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2024년도 사업비 예산에 편성되었음.

□ 정부출연금과 자체수입을 합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연구기관의 2023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결산액은 각각 예산액 1조 1,304억 4,300만원보다 559억 7,000만원이 증가한 1조 1,864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결산액 중 정부출연금은 5,288억 300만원이고, 자체수입은 5,534억 8,700만원으로 정부출연금이 전체 수입액의 46.7%를 차지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출연연구기관 결산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2023 예산액(A)	2023 결산액(B)	증감액 (B-A)	비 고
수 입	1. 정부출연금	544,774	528,803	△15,971	
	○ 정부출연금 편성	545,971	530,000	△15,971	
	- 인건비	315,406	300,078	△15,328	
	- 기관고유사업비	59,587	59,134	△453	
	- 일반사업비	110,585	110,585	-	
	- 경상운영비	54,634	54,444	△190	
	- 시설비	5,759	5,759	-	
	○ 정부출연금 대체(△)	△1,197	△1,197	-	
	2. 자체수입	481,713	553,487	71,774	
	- 수탁용역수입	389,770	456,220	66,450	
	- 정부대행사업 수입	76,905	74,364	△2,541	
	- 이자수입	2,723	8,141	5,417	
	- 기타수입	11,118	13,566	2,448	
	- 청사보증금 및 매각잔액	-	-	-	
	- 정부출연금 대체	1,197	1,197	-	
	3. 전기이월금	74,194	74,194	-	
	4. 융자금 회수	-	-	-	
	5. 차입금	3,019	2,962	△57	
	6. 연구개발적립금	26,743	26,967	224	
	계	1,130,443	1,186,413	55,970	
지 출	1. 인건비	435,662	395,416	△40,247	
	2. 연구사업비	574,511	546,639	△27,872	
	○ 기관고유사업비	74,790	67,138	△7,652	
	○ 일반사업비	125,658	110,944	△14,714	
	○ 수탁용역사업비	283,804	284,640	836	
	○ 정부대행사업비	88,150	82,287	△5,863	
	○ 청년인턴쉽운영	2,109	1,630	△479	
	3. 경상운영비	71,574	68,515	△3,058	
	4. 시설비	8,792	4,385	△4,407	
	5. 기타(차입금 등)	3,417	2,988	△428	
	6. 연구개발적립금	36,487	26,105	△10,381	
	7. 결산잉여금처분 등		142,365	142,365	
	계	1,130,443	1,186,413	55,97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 이월내역

-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총 4,500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에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방안 연구용역의 사업완료일 미도래에 기인함.

〈2023회계연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금 액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방안 연구용역’ 1건 사업완료일 미도래	45
총 계		4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라. 이·전용내역

- 2023회계연도 이용은 없으며, 전용액은 전년도 11억 8700만원 대비 3.5% 증가한 12억 2,800만원임.

- 전용사유는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충당 등에 기인함.

- 구체적인 이·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제협력 확대에 인한 출장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2억 3,200만원, ② 청년 인턴 임금 지급을 위한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 일용임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 2,200만원, ③ 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4억 3,800만원²⁾, ④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증원으로 인한 국내여비 등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 7,100만원 등을 각각 전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내 용	금 액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자산취득비	20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복리후생비	8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국외여비	232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고용부담금	12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일반연구비	30
(전용) 인건비 예산 부족분 확보 - 일용임금	122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일반수용비	81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국내여비	438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일반수용비 등	30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국외업무여비	24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공사비	31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국내여비 등	171
(전용) 인건비 예산 부족분 확보 - 국내여비 등	29
총 계	1,22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규제조정실 3,000만원, 정부업무평가실 3,000만원, 부패예방추진단 4,800만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2,000만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2억 8,000만원, 청년정책조정실 3,000만원 등

마. 불용내역

-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6,663억 1,900만원 대비 3.7%인 244억원이며, 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출연금 159억 7,100만원 미배정에 따른 불용에 기인함.

〈2023회계연도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불용액
합 계	24,400
○ 인건비	2,153
○ 기본경비	1,143
○ 사업비	21,104
-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95
- 사회통합정책 및 안전관리 추진	226
- 규제개혁	1,080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3,259
- 행정지원	376
-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95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15,971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액 및 수납액은 없었음.

나.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예산현액 119억 3,000만원이며, 이 중 96.4%인 115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등	이체				
□ 합계	11,930	11,930	-	-	-	11,930	11,501	-	429
○ 에너지경제연구원 (R&D) 출연금	11,930	11,930	-	-	-	11,930	11,501	-	42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 이월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전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마. 불용내역

☐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119억 3,000만원 대비 3.6%인 4억 2,900만원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 4억 2,900만원 미배정에 따른 불용에 기인함.

〈2023회계연도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불용액
합 계	429
- 에너지경제연구원(R&D)	42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II.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³⁾

□ 2023회계연도 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산은 4,136억 6,400만원이고, 부채는 15억 4,400만원이며, 순자산은 4,121억 2,000만원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808	740	68	9.2
	일반유형자산	407,384	407,008	376	0.1
	무형자산	4,728	3,487	1,241	35.6
	기타비유동자산	745	1,085	△340	△31.3
	자산계	413,664	412,319	1,345	0.3
부 채	유동부채	-	44	△44	△100.0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1,544	1,098	446	40.6
	부채계	1,544	1,142	402	35.2
순자산	기본순자산	127,637	127,637	-	-
	적립금 및 잉여금	△3,481	△4,733	1,252	△26.5
	순자산조정	287,964	288,274	△310	△0.1
	순자산계	412,120	411,178	942	0.2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며, 현재의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023회계연도 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13억 4,5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및 외부구입소프트웨어 당기 구입에 의한 무형자산 증가에 기인함.
- 2023회계연도 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채는 전년도 말 대비 4억 200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증가에 기인함.
- 2023회계연도 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9억 4,200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운영결과와 재원의조달 및 이전의 영향에 기인함.

2. 재정운영표⁴⁾

□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 결과는 6,608억 9,200만원 손실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 6,452억 6,900만원 손실 대비 손실 규모가 156억 2,300만원 증가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540,515	521,698	18,817	3.6
II. 관리운영비	120,393	123,845	△3,453	△2.8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16	275	△259	△94.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60,892	645,269	15,623	2.4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60,892	645,269	15,623	2.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프로그램 순원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등 프로그램 원가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88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관리운영비⁵⁾는 기타관리경비 감소로 34억 5,300만원 감소하였음.

□ 비배분수익⁶⁾은 전년도 대비 2억 5,900만원 감소하였고,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는 6,608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억 2,300만원 증가함.

4) 재정운영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냄.

5) 프로그램과 직접적 관련되지 않는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관련 비용

6) 재화 및 용역 등 반대급부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중 프로그램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수익

3. 순자산변동표

-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말순자산은 4,12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순자산 4,111억 7,800만원 대비 9억 4,200만원 증가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411,178	418,378	△7,200	△1.7
II. 재정운영결과	660,892	645,269	15,623	2.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62,144	638,543	23,601	3.7
IV. 조정항목	△310	△474	164	34.6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12,120	411,178	942	0.2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기초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72억원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액이 전년도 대비 236억 1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비(세출)의 증가에 따른 국고수입의 증가 등에 기인함.
- 조정항목의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1억 6,400만원으로, 자산재평가이익의 증가에 기인함.

IV. 성과보고서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3년도 정책비전을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로 설정하여, 1대 전략목표를 설정·추진하였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관리체계도〉

임 무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개혁, 제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한다
비 전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
전략목표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성과목표	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성과달성도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도는 총 3개 지표 중 2개를 달성(66.7%)하였음.

-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는 전략목표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의 프로그램목표 ‘I-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중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실적4.65/목표4.68 달성률99.4%)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 달성도 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도			
	합 계	성과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3	-	2	1
합 계	3	-	2	1

주: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이상~130%미만, 미달성: 100% 미만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프로그램목표 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결산실적은 예산 대비 88.9%인 359억원임.

〈프로그램목표 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목표관리체계		회계구분	단위사업명	2023 예산	2023 결산	집행률
총 계				404	359	88.9
전략목표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404	359	88.9
프로그램목표 I-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국무총리 보좌역량 제고				404	359	88.9
I-1-일반재정(1)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일반회계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66	65	98.6
I-1-일반재정(4)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일반회계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22	20	89.6
I-1-일반재정(3)	규제개혁	일반회계	규제개혁	82	71	86.2
I-1-일반재정(4)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일반회계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216	187	86.5
I-1-일반재정(5)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일반회계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19	18	94.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2장 검토의견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조세심판원⁷⁾: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구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으로,⁸⁾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2023회계연도 조세심판원 관련 세부사업은 4개로, 예산현액 163억 800만원 중 155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조세심판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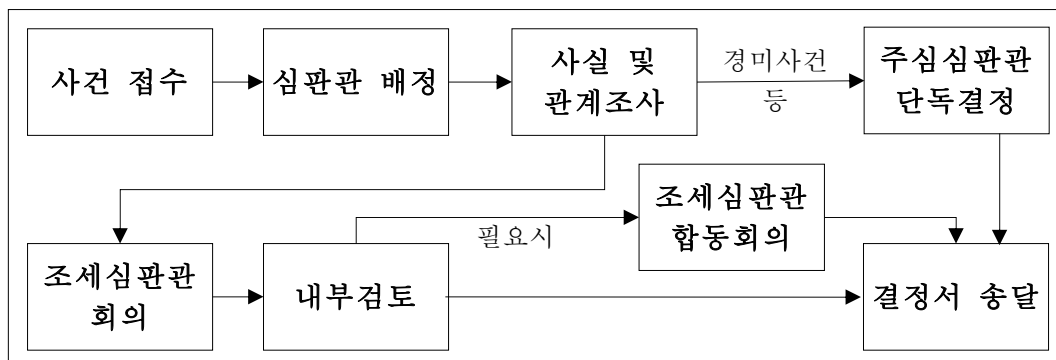
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 산
	예 산 액		전년도 이 월	이전용	예 산 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11,750	11,750		△48	11,702	11,120	-	582	11,610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665	665		56 △15	706	689	-	18	715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3,595	3,595	15	126 △119	3,617	3,477	-	140	1,342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283	283		-	283	278	-	5	433
합계	16,293	16,293	15	182 △182	16,308	15,564	-	745	14,100

(자료: 조세심판원)

7)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7001-10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7011-20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7036-307)
8)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하 생략)

□ 조세심판원은 ① 납세자가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② 이를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으로 구성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되⁹⁾ ③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등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결정함.¹⁰⁾

〈조세심판청구사건의 접수, 심리 및 결정절차〉



9)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5천만원(지방세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단서).

10)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②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2.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조세심판관회의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국제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검토의견

(1)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2023년도 조세심판의 평균 사건처리일수는 172일로, 법정처리기한 90일을 크게 넘어서고 있어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 권리구제 지연을 야기하므로, 조세심판원은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최근 5년간의 평균 사건처리일수를 살펴보면, 2021년도 196일, 2022년도 234일, 2023년도 172일 등으로 법정처리기한 90일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처리 일수〉

(단위: 일, %)

처리 연도	60일 이내		61~90일		91~180일		180일 초과		총 건수	평균 처리일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9년	498	5.8	2,182	25.2	3,516	40.6	2,457	28.4	8,653	160
2020년	76	0.6	972	7.9	7,452	60.7	3,782	30.8	12,282	178
2021년	279	2.3	3,870	31.9	2,445	20.1	5,553	45.7	12,147	196
2022년	62	0.5	594	5.1	5,156	44.6	5,753	49.7	11,565	234
2023년	997	6.0	7,247	44.0	2,857	17.3	5,384	32.7	16,485	172

(자료: 조세심판원 제출자료 재구성)

□ 조세심판원은 심판 청구 사건이 최근 급증하였고,¹²⁾ 사건의 난이

1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도 또한 전문·복잡화된 반면, 조직·인력은 적절히 강화되지 않아 신속한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임. 또한, 사법절차를 준용하는 조세심판의 특성상 법령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법정처리기한 90일 중 상당기간¹³⁾이 경과하여, 법정기한에 맞추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함.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¹⁴⁾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¹⁵⁾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세행정 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다만,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후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¹⁶⁾

12) 사건 접수 건수: 2019년 8,658건 → 2021년 13,025건 → 2023년 16,781건

13) 심판청구 및 배정 7일 + 처분청 답변서 제출 10일 + 청구인 항변서 제출 14일 + (답변·항변 추가시마다 10일) + 회의통지 및 개최 14일 + 결정서 작성 및 조정검토 등 30일 + 우편 송달 소요일 = 80 ~ 90일

14)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62조제1항),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16)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조세심판의 경우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사건처리지연은 국민의 권리구제 지연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은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을 마련하여 청구사건의 처리 일수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2) 조세심판 정보화¹⁷⁾: 전자심판제도 운영 부진

조세심판원은 부진한 전자심판 운영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조세심판원은 2019년 7월부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를 통해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심판제도를 시행하였으며,¹⁸⁾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2억 7,800만원을 집행함.

〈조세심판 정보화(7036-307)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현액	283	283	283	433
집행액	277	277	278	-

(자료: 조세심판원 제출 자료 재구성)

-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전자심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총 접수건수 대비 전자심판 접수 비율이 22.9%이며, 다른 연도에도 비슷한 실적을 나타냄.

17) 세무사업: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7036-307)

18)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자심판 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수)

연도	총 접수건수	전자심판 접수건수	전자심판 비율	증감
2020	12,795	3,037	23.7%	-
2021	13,025	3,214	24.7%	1%p
2022	10,373	3,235	31.2%	6.5%p
2023	16,781	3,842	22.9%	△8.3%p

(자료: 「2023 조세심판통계연보」 내용 재구성)

□ 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¹⁹⁾의 온라인 청구 비율을 확인해 보면, 2023년도에 68.7%에 이르고,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74개기관) 이용률 현황〉

(단위: 건수)

연도	총 접수건수	온라인 청구	온라인 비율	증감
2020년	76,332	30,296	39.7%	2.6%p
2021년	71,619	34,251	47.8%	8.1%p
2022년	77,259	46,077	59.6%	11.8%p
2023년	102,562	70,471	68.7%	9.1%p

(자료: 「2022 국민권익백서」 p. 300, 「2023 국민권익백서」 p.285 내용 재구성)

□ 전자심판제도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조세심판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은 전자심판 접수비율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9) 국민이 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사건 진행상황 및 재결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2년 기준 총 74개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3) 조세심판원 기본경비²⁰⁾: 본사업 시행 가능성이 낮은 ISP 수립사업
실시로 인한 예산 낭비

조세심판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조세전자심판시스템 개발사업의 단독 실시 가능성이 낮음에도 2023년에 별도로 ‘조세전자심판시스템 ISP 수립’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4년도에 본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ISP 수립 집행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조세심판원은 2023년도에 일반연구비(260-01) 1억 4,450만원을 들여 조세전자심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실시하였음.

○ 이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청사이전²¹⁾ 예산과 함께 반영되었음.

□ 조세심판원은 2023년도에 수립한 ISP(정보화전략계획)를 반영해 2024년도에 본사업인 조세전자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여야 했지만, 관련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시스템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세전자심판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반영

20)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21) 조세심판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에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국회 심의단계에서 이전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23년 6월에 정부세종청사 2동에서 4동으로 이전함.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함.

□ 그런데, 이번 정부는 2022년 7월에 이미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²²⁾을 통합하는 ‘원스톱 행정심판’을 국정과제²³⁾로 채택했음.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8월에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 중앙노동위 등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행정 비효율 및 국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기관의 온라인시스템 통합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음.²⁴⁾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에 3억 5,800만원을 들여 ‘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구현 BPR²⁵⁾/ISP 수립’ 사업을 집행하였음.²⁶⁾

□ 행정심판시스템의 통합은 이번 정부 초부터 논의되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현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조세전자심판시스템의 단독 개발 가능성이 낮음에도 조세심판원이 무리하게 ISP 수립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음.

□ 향후, 조세심판원은 다른 기관과의 사업 중복 가능성 등을 철저히 심사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와 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2) 특별행정심판이란 특정분야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따로 정한 특례 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특별행정심판으로 특허심판, 조세심판, 해양안전심판 등이 있음.

23)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년 7월, p.37

24)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8.23.

25)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26) 2023년 결산, 예결위 공통요구자료 II-1, p.94

(4) 조세심판원 기본경비²⁷⁾: 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

조세심판원은 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집행 시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연구결과물 평가 및 공개 등을 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정책 개발 및 현안에 관한 연구는 정책연구비(260-02)로 집행하여 관련 법령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260-01)는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에 활용할 수 있는 경비인 반면, 정책연구비(260-02)는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학술연구 포함) 및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는 경비임.

○ 또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란 정책 개발이나 정책현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조사·연구로서, 정책대안을 결과물로 제시하는 조사·연구는 물론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도 포함됨.²⁸⁾

□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 과제를 살펴보면, 3건 모두 조세심판원의 정책 개발 및 현안에 관한 사항임에도 정책연구비(260-02)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였음.

27)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28)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24.1. p.2

〈 일반연구비(260-01)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과제명	집행액	계약기간
2021	포스트코로나 조세심판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20,000	2021.12.8. - 2021.12.31.
2022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연구	45,455	2022.12.1. - 2023.3.31.
2023	심판결정의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20,000	2023.10.6. - 2023.12.22.

(자료: 조세심판원 제출 자료 재구성)

□ 일반연구비(260-01) 집행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반면, 정책연구비(260-02)의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²⁹⁾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정책연구결과물 및 그 평가결과 등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www.prism.go.kr)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절차를 둔 것은 연구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체결한 계약 내용과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등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취지일 것임.

29)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 조세심판원은 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함으로써 정책연구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연구결과물의 평가 및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조세심판원은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만 할 뿐 직접 정책을 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연구는 정책연구가 아니라 일반연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정책 개발이나 정책 현안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조사·연구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연구용역은 정책 담당부처 해당 여부가 아니라 그 연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조세심판원은 정책 개발 및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과 평가결과 등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2. 대테러센터 운영³⁰⁾: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의 방향성 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억 8,600만원 중 8억 3,200만원(93.9%)이 집행되고 5,400만원(6.1%)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테러센터 운영	886	886	-	4 △4	886	832	-	54	674

(자료: 국무조정실)

□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³¹⁾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해 설치됨.

30) 세부사업: 대테러센터 운영(7032-303)

3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3. 테러정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2) 검토의견: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의 방향성 검토 필요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사업은 테러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23년도 사업 계획상 대국민 홍보 측면의 고려가 부족하므로, 국무조정실은 사업 방향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대테러센터는 테러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매년 1회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일반용역비(210-14) 1억 6,500만원을 들여 훈련을 실시하였음.

〈국가대테러종합훈련 관련 일반용역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용역비(210-14)	155	154	165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2023년도 국가대테러종합훈련에는 대테러센터·국가정보원·군(軍)·경찰·소방·해경 등 12개 기관에서 300여명의 인력이 참여하였고, 국가테러대책위원, 초청인사³²⁾ 등 250여명이 훈련 현장을 참관하였음.
- 2023년도 훈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테러 장비전시, 드론 시범, 화학테러 대응, 항공기 피랍 진압작전, 공항시설 테러범 진압작전 등으로 구성되며, 훈련의 총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임.

32) 훈련장소 관할 지자체장·기관장·부대장·주한 외국군무관단·테러대책실무위원 등

〈2023년도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세부내용〉

구 분	훈련 내용
대테러 장비전시	o 테러유형별 장비 및 차량
대테러 종합훈련 (29-34분)	o 사회자 소개 및 훈련진행 순서 보고
	o 훈련 준비영상 시청
	o 드론시범: 드론기술⇨드론위력⇨불법드론 탐지·차단 (7-10분)
	o 화학테러 대응 : 구조·구급, 탐지·제독 (6분)
	o 항공기 피랍 시 특공대 진압작전 : 실제항공기 운용 (8-10분)
	o 공항시설 테러범 난입 시 특공대 진압작전 (8분)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동 훈련의 용역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 모니터 및 스피커 등 영상·음향장비 설치, 테러 관련 동영상 제작, 전문 아나운서 섭외, 항공기 등 훈련기자재 임차, 훈련구역 안전 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테러 상황을 참관인 앞에서 시연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나타남.

〈2023년도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용역사업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영상 및 음향장비 등 설치·운영	o 영상장비: 대형 LED모니터, ENG 카메라, 항공촬영장비, 중계장비 o 음향장비: 고출력 스피커, 마이크 세트, 통제본부용 무전기 지원 o 동영상 제작: 인트로 영상, 테러관련 영상, 훈련 중 상영할 기관별 조치 사전녹화 등 o 영상, 음향장비, 중계장비 등을 훈련현장에서 조정·운영할 전문 인력 포함
훈련 관련 홍보 및 진행	o 홍보: 훈련장 주변 대형소형 현수막, 훈련일정 리플릿, 초청장 등 홍보물 디자인·제작 o 유튜브 홍보: 훈련영상 풀버전 및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 후 탑재, SNS 홍보방안 강구 o 진행(총 3명): 사회자는 대테러센터 홍보대사(남 1, 여1) 외 전문 아나운서 1명 섭외
모의훈련장 조성 및 참관석 등 제작·설치	o 모의훈련장, 참관석, 운영텐트, 사회자 무대, 장비전시장 제작·설치
훈련기자재 구입·임차	o 항공기, 드론기술 시범용 드론 및 운영인력, 훈련용 드론·차량·마네킹 등
기 타	o 훈련대원 중식제공, 훈련구역 안전확보, 훈련 관련 문서 및 영상제작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그러나 2023년도 훈련 시에 일반 시민의 참여는 없었으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음.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테러 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려 했던 당초 훈련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다 보기 어려움.

□ 대테러센터는 일반 시민의 참관은 훈련장소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2019년도 훈련은 부산 벡스코광장, 2022년도 훈련은 일산 킨텍스 광장에서 실시하여 일반 국민도 현장에서 참관할 수 있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훈련 장소가 보안 구역이기 때문에 관계기관 인원만 참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함.

○ 또한, 현장 참관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송·보도 매체 및 대테러센터 유튜브 채널 등의 생중계·녹화 중계를 통해 훈련 전 과정을 국민들이 온라인 참관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국가 대테러종합훈련 전체영상(약 50여분 분량) 시청 주요사례 〉

훈련연도	장소	조회수(회) ('24.6.4 기준)
2019년	부산 BEXCO	KTV 6천, 연합뉴스 3.2만
2020년	인천공항(보안구역)	KTV 5만, 국방TV 5.6만
2021년	경인항	KTV 12만
2022년	일산 킨텍스	KBS 7.1만, SBS 10만
2023년	인천공항(보안구역)	대테러센터 유튜브 5.7만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러나,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은 많은 훈련 인력과 장비 및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대국민 홍보’라는 당초의 사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테러 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을 동 훈련의 목표로 한다면 더 많은 일반 시민이 훈련을 참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내용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만약 안전 등의 문제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테러 현장대응능력 강화’ 목적에 집중하여 범정부적으로 준비해 온 대테러 관계기관들의 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³³⁾: 규제심판제도 예산 집행 실적 부진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 억제를 통해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5억 3,100만원 중 13억 1,300만원(85.8%)이 집행되고, 2억 1,800만원(14.2%)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531	-	-	1,531	1,313	-	218	1,759

(자료: 국무조정실)

2) 검토의견

2023회계연도에 신규로 편성된 규제심판제도 운영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규제심판부의 현실적인 회의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불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3) 세부사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 규제심판제도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발굴하고, 중립적인 규제심판부가 과제를 심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임.

○ 2022년 8월 제정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국무총리훈령)은 국무조정실장은 전문성과 활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심판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⁴⁾

- 국무조정실은 이에 근거하여 2022년 8월 대학교수, 전문직 종사자(변호사·의사·약사 등),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 100여명을 규제심판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규제심판부는 규제개선과제³⁵⁾에서 선정된 규제심판부 심의과제³⁶⁾

34)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심의회의의 구성) ① 심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성과 활동경력 및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2조(명칭)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명칭은 '규제심판부'로 한다.

35)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2.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규제혁신추진단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3.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관한 규제개선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개선과제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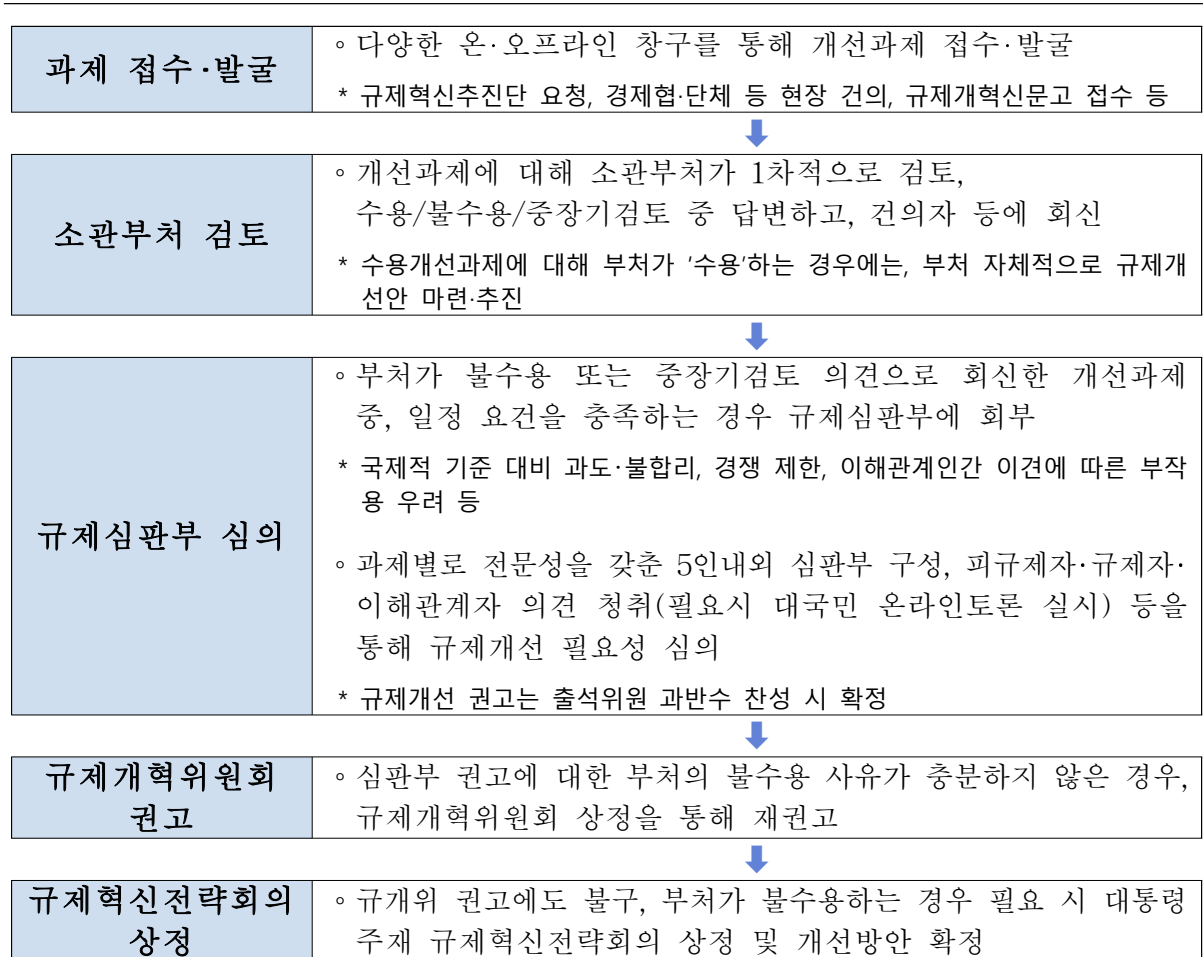
36)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5조(심의과제의 선정)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의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의 심의과제로 선정한다.

1.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판부의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심의할 수 있음.³⁷⁾

〈규제심판제도 절차〉



(자료: 국무조정실)

2. 시장진입이나 공정한 경쟁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3.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규제

② 규제총괄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분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7)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심의회의의 회의) ①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규제개선과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의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심의 안전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지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심의회의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3년도 예산에 일반수용비(210-01목) 2억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구체적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5명의 규제심판위원이 140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였음.

□ 그런데, 2023년도 규제심판부의 회의 개최실적은 예산안 편성기준의 12.1% 수준인 17건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포함하여 일반수용비 총 3,65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7.4%로 나타났음.

〈규제심판제도 운영 예산 일반수용비 집행실적〉

(단위: 건, 천원)

구분	편성기준		결산	
	회의건수	예산액	회의건수	집행액
규제심판회의	140	210,000	17	21,050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등			19	15,450
합계	140	210,000	36	36,500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향후 현실적인 규제심판부의 회의개최 예상건수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예산의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³⁸⁾: 덩어리규제 발굴 사업등 집행실적 부진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전직공무원, 연구기관, 민간)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여 덩어리 규제³⁹⁾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8억 5,000만원 중 49억 6,000만원(84.8%)이 집행되고, 4,500만원이 이월(0.8%)되었으며, 8억 4,400만원(14.4%)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5,630	-	-	5,850	4,960	45	844	5,154
-추진단 운영	4,486	-	23 △23	4,486	3,952	-	534	4,282
-덩어리 규제발굴	402	171	-	573	410	45	117	402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385	-	-	385	196	-	189	312
-추진단 홍보	358	49	-	407	402	-	5	158

(자료: 국무조정실)

38) 세부사업: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39)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

2) 검토의견

(1)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 및 발굴규제 검토·개선·조정 사업 집행 실적 부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덩어리 규제발굴,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중복·복합 규제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덩어리 규제의 집중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 (2022.8.1.)하였음.⁴⁰⁾

○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된 한시조직(최초 3년 + 연장 2년)으로, 2024년 8월 기준 경제·사회분과 등 2개 분과별 전문위원(전직공무원 등 90명, 경제단체·연구기관 등 33명)과 지원국(부처 파견 인력 등 20명 내외) 등 총 14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됨.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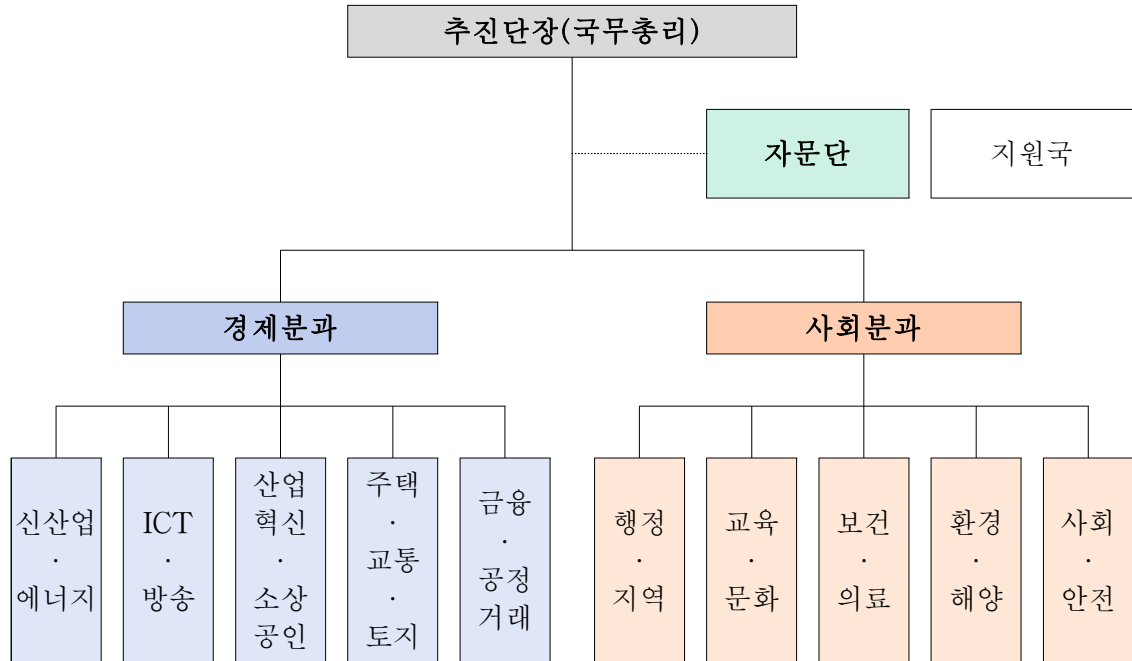
40) 경제·사회 2개 분과별 전문위원(전직공무원 75명, 경제단체·연구기관 34명)과 지원국(부처 파견 인력 등 20명 내외) 등 총 130여 명으로 구성됨.

41)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한 발굴·검토·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혁신추진단 (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규제
2.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3.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분야의 규제
4.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

〈규제혁신추진단 조직도〉



(자료: 국무조정실)

- 규제혁신추진단의 업무는 ①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덩어리과제 제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덩어리과제 발굴, ② 추진단장(국무총리) 주재 회의 등을 통한 개선안 논의, ③ 개선방안 발표, ④ 필요 시 집행 상황 점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짐.

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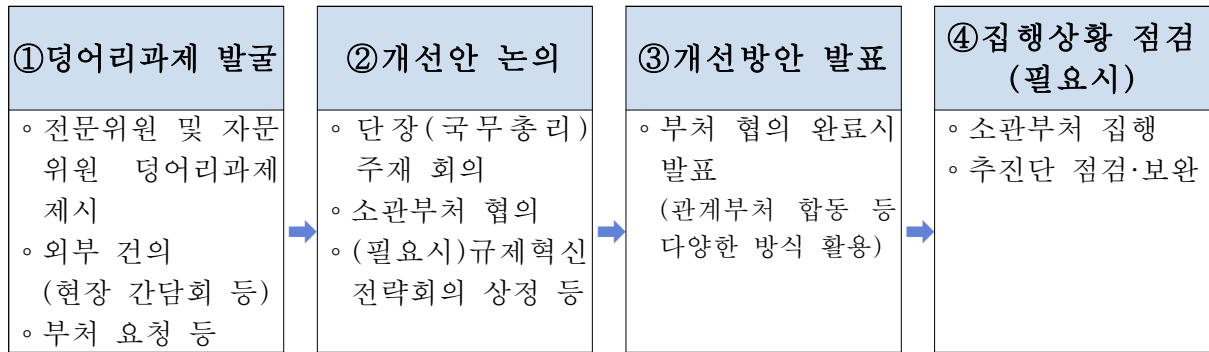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원으로 채용된 사람
 - 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
 - 나. 규제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국무총리가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된 사람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 다.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

라. 그 밖에 추진단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규제혁신추진단 업무절차〉



(자료: 국무조정실)

□ 한편,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8월 출범에 따른 신규인력, 운영경비 및 홍보사업 추진 등을 위해 예비비 36억 3,200만원을 배정받아 28억 6,100만원을 집행(78.8%)했으며, 2023년도에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이 사업은 ①추진단 운영, ②덩어리 규제발굴, ③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④추진단 홍보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과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사업의 2023회계연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은 덩어리 규제의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비 2억원, 회의참석 수당·자문료 및 회의자료 제작·배부를 위한 일반수용비 1억 3,000만원, 전문가간담회를 위한 사업추진비 7,200만원 등 총 4억 2백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고 2억 4,100만원 (60.0%)이 집행되었으며,

- ‘발굴 규제 검토·개선’ 사업은 회의참석 수당·자문료 및 회의자료 제작·배부를 위한 일반수용비 2억 2,600만원,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억 3,400만원, 관계기관 회의 목적의 사업추진비 2,500만원 등 총 3억 8,500만원 중 1억 9,600만원(50.9%)이 집행됨.

<2023회계연도 집행실적 부진 내역사업 현황(전년도 이월액 제외)>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덩어리 규제발굴	402	241	45	117	60.0	402
- 일반수용비(210-01)	130	30	-	100	23.1	130
- 사업추진비(240-01)	72	72	-	-	100.0	72
- 정책연구비(260-02)	200	139	45	17	69.5	200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385	196	-	189	50.9	312
- 일반수용비(210-01)	226	124	-	102	54.9	190
- 국내여비(220-01)	134	47	-	87	35.1	97
- 사업추진비(240-01)	25	25	-	-	100.0	25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2023년 5월 말까지 코로나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회의 및 현장방문이 축소되어 회의수당 및 여비 미집행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나, 코로나 상황이 해소된 2024년에도 두 내역사업 집행실적은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2024년 상반기 집행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예산액이 실제 소요에 비하여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23~2024회계연도 집행실적 비교(상반기 기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덩어리 규제발굴	402	38	9.5	402	33	8.3
- 일반수용비(210-01)	130	15	11.5	130	13	9.7
- 사업추진비(240-01)	72	23	32.1	72	21	29.0
- 정책연구비(260-02)	200	-	-	200	-	-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385	80	20.7	312	71	22.6
- 일반수용비(210-01)	226	50	15.5	190	32	16.8
- 국내여비(220-01)	134	21	33.7	97	31	32.1
- 사업추진비(240-01)	25	8	20.7	25	8	30.1

(자료: 국무조정실)

□ 따라서, 향후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을 통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덩어리 규제발굴 정책연구비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국무조정실은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의 정책연구용역을 지연 발주하여 정책연구비를 연례적으로 이월하고 있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계약 과정에서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2023년도에 덩어리 규제발굴 내역사업 예산 2억원으로 총 6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5건의 용역이 완료되어 1억 3,900만원(69.5%)을 집행하고, 완료되지 못한 1건의 용역에 대한 미집행액 4,5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덩어리 규제발굴 정책연구비 이월 현황〉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시작	종료		
소방안전분야 화재보험제도의 현실화 방안	2023.04.03	2023.06.30	20,000	-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2023.05.19	2023.08.31	27,273	-
인구감소지역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검토	2023.05.19	2023.08.31	27,000	-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2023.05.25	2023.07.31	23,750	-
법정 인증규제 범위 정립 및 관리체계 연구	2023.06.09	2023.12.15	40,909	-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방안	2023.10.27	2024.04.30	-	45,455
합 계			138,932	45,455

(자료: 국무조정실)

□ 정책연구비 이월 사유는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연내에 미집행되었기 때문임.

- 국무조정실은 공급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시장 중심의 의사결정이 반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하에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개요〉

-
- 계약명: 생활밀착형 온라인 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 계약기간: (당초) 2023년 10월 27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 2023년 10월 27일 ~ 2024년 4월 30일 (2023년 12월 27일 변경계약)
 - 계약금액: 4,500만원
 - 주요 용역내용:
 -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업 분야별 제도 현황 및 실태 조사
 - 우리나라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 분야별 이해관계자 갈등 원인 및 현황 파악
 - 해외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업 제도개선 사례 연구
 - 디지털 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례
 -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 분야에 경쟁 요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사례 검토
-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이 사업에 대한 최초의 용역입찰공고를 2023년 9월에 개시하여 10월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음.

- 최초 계약 완수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이었으나, 12월 19일 계약 상대방이 계약기간 연장을 통하여 연구범위 확장 필요성 및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청취 등을 이유로 용역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승인하여 2023년 12월 27일에 용역기간을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연구용역 추진경과〉

시기	추진 경과
2023.09.15.	◦ 국무조정실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2023.09.18.~2023.10.10.	◦ 연구용역 1차 입찰공고: 유찰
2023.10.12.~2023.10.23.	◦ 연구용역 2차 입찰공고: 단독응찰
2023.10.24.~2023.10.25.	◦ 제안서 기술평가 및 기술부문 추가협상
2023.10.27.	◦ 계약체결
2023.12.19.	◦ 연구용역 수행기관 용역기간 연장요청
2023.12.22.	◦ 용역기간 연장 및 예산이월 요청
2023.12.27.	◦ 변경계약 체결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정책연구사업의 집행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첫째,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발주 등 정책연구사업의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9월에서야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후속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해당 연구용역은 법정 입찰공고 기간, 협상 등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뿐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2023년에 추진한 다른 덩어리 규제발굴 정책연구용역에 비해 더 큰 예산이 책정된

용역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충분한 연구 수행기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연구과제 선정 등의 절차를 조기에 착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국무조정실은 2022년에도 4건의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 지연으로 1억 7,100만원의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은 향후 관행적인 이월의 방지를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2회계연도 덩어리 규제발굴 정책연구비 이월 현황〉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액	다음연도 이월액
	시작	종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 연구	'22.11.29	'23.3.31	45,454	45,454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연구	'22.11.28	'23.2.28	36,000	36,000
국민의 바다 접근·이용 제한 규제혁신	'22.11.25	'23.3.27	39,500	39,500
기업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22.12.6	'23.2.28	50,000	50,000
합 계				170,954

(자료: 국무조정실)

- 둘째, 국무조정실이 12월말 연구 수행기관의 요청으로 연구기간의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내도록 규정⁴²⁾하고 있으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는 불가항력의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⁴³⁾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을 계약기간 내에 완수하도록 하여 국가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4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되, 계약상대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연구수행기관은 ① 과제 수행과정에서 당초 대상(법률·의료·세무·부동산중개) 외에 더 많은 분야(안경·미용) 등 더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②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의 여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사유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은 연구수행기관이 직접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이미 기재된 사항⁴⁴⁾이라는 점에서 계약기간의 연장

44) 산업연구원,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방안 사업계획서」, 2023. 10.

3. 수행전략 및 추진방향

<수행전략>

-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함께 관련 협회 및 단체, 그리고 기업 대상의 인터뷰,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함.

① 문헌조사

- 법령분석, 문헌 연구 등을 통해 각 서비스 관련 직간접적인 규제 및 제도 현황을 파악함.
 - 각 서비스 시장마다 적용되는 제도와 규제를 중심으로 현황 파악이 필요함.
 - 특히, 본 과제에서 규제나 제도 파악을 위한 법제도 관련 문헌조사는 여타 과제와 비교하여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큼.

② 관련 기업이나 전문가 대상의 심층 인터뷰

-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중개서비스 시장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이해관계자 갈등의 원인과 양태와 애로 요인 등을 파악함.

③ 자문회의 등 외부전문가 활용

-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중개서비스 시장 전문가 의견 청취
 - 특히, 많은 분야의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의 효과성을 연구진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함.

④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중개서비스 시장 등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문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개별 시장 현황 파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추가업무 수행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⁴⁵⁾하면서,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4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3. (생략)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 없이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예산 산출 내역서상 인건비 2개월분은 전체 집행액 약 4,500만원의 72.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변경계약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예산 산출 내역서〉

(단위: 원, %)

구분	금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 건 비	32,959,000	72.5	천단위이하 절사
- 책임연구원	9,790,000		$6,993,408\text{원} \times 2\text{개월} \times 1\text{명} \times 70\% = 9,790,000\text{원}$
- 연구원	15,014,000		$5,362,452\text{원} \times 2\text{개월} \times 2\text{명} \times 70\% = 15,014,000\text{원}$
- 연구보조원	4,660,000		$3,584,618\text{원} \times 2\text{개월} \times 1\text{명} \times 65\% = 4,660,000\text{원}$
- 보조원	3,495,000		$2,688,554\text{원} \times 2\text{개월} \times 1\text{명} \times 65\% = 3,495,000\text{원}$
2. 경 비	10,248,000	22.5	비목별 경비 집행 세부내역 및 산출내역
- 국내여비	948,000		- (세종-서울 기준) · $100,000\text{원} \times 2\text{명} \times 3\text{회} = 600,000\text{원}$ · $87,000\text{원} \times 2\text{명} \times 2\text{회} = 348,000\text{원}$
- 수용비	1,000,000		- 인쇄,복사,제본 $25,000\text{원} \times 20\text{부} \times 2\text{회} = 1,000,000\text{원}$
- 업무회의비	1,500,000		- 업무회의비 $30,000\text{원} \times 10\text{명} \times 5\text{회} = 1,500,000\text{원}$
- 전문가 활용비	6,000,000		- 외부 전문가비 $300,000\text{원} \times 5\text{명} \times 4\text{회} = 6,000,000\text{원}$
- 임차료	800,000		- 외부회의장 임차료 $200,000\text{원} \times 4\text{회} = 800,000\text{원}$
3. 일반관리비	2,247,540	4.9	(인건비+경비)의 6% 이내
소 계(1+2+3)	45,454,540	100.0	
4. 부가가치세	-	-	- 면세법인사업자로 해당사항 없음
총 계	45,454,540	100.30	

주 인건비 단가는 2023년도 기재부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작성

(자료: 국무조정실)

- 결과적으로, ① 지체상금 납부에 대한 고려 없이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가사 추가업무 수행이 발주기관인 국가에 유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③ 정책연구과제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할 때 당초 사업 수행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선정한 점(2개월)에서 집행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향후 정책연구사업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의 발주 지연을 지양하고,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집행을 보다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현안과제 추진 지원⁴⁶⁾: 임시조직의 존속기한 설정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현안과제 추진 지원”사업은 ①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사업 관련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을 위한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및 ② 「세월호피해지원법」 상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 사무 처리 등을 위한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 예산현액 2억 8,400만원 중 2억 1,500만원(75.7%)이 집행되고, 6,900만원(24.3%)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현안과제 추진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 획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전 용 등	예 산 현액	집 행 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 용액	
	당초	수정							
현안과제 추진 지원	284	284	-	2 △2	284	215	-	69	213 ⁴⁷⁾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121	121	-	2 △2	121	116	-	5	105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163	163	-	-	163	100	-	63	108

(자료: 국무조정실)

-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8.9.)을 근거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와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46) 세부사업: 현안과제 추진 지원(7035-301)

47) 동 사업은 2024년도에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었고,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7035-304) 사업에 1억 5백만원,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7035-310) 사업에 1억 8백만원이 각각 편성됨.

위해 설치되었음.

- 세월호피해지원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7항⁴⁸⁾ 및 시행령 제37조⁴⁹⁾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해 설치되었음.

2) 검토의견: 임시조직의 존속기한 설정 필요

국무조정실은 주한미군기지지원단과 세월호피해지원단의 업무 추진 실적,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직제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임.

-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및 세월호피해지원단을 별도정원과 비별도파견⁵⁰⁾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음.

4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지원·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4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지원·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①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추모위원회에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50)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원소속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없는 파견 인력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및 세월호피해지원단 현황〉

구 분	인 원	직제 반영	별도정원	비별도파견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11명 (2팀)	×	3명 - 국무조정실 2 - 행안부 1	8명 - 국조실 1, 국방부 2, LH 1, 평택 1, 동두천 1, 의정부 1, 경기도 1
세월호피해 지원단	8명 (2팀)	×	5명 - 국무조정실 2 - 행안부 1, 복지부 1, 해수부 1	3명 - 안산 2, 진도 1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임시조직은 일시적 과제나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직접 근거하지 않더라도 기관운영의 자율권 내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설치 근거에 명시하고, 존속기한 경과 시에는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기능을 종료시키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2년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국무총리 훈령 이상의 법령으로 2020년 이전에 설치된 임시조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음.⁵¹⁾
- 또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51)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중 「임시조직 설치·운영지침」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및 세월호피해지원단의 설치연도 및 존속기한〉

구 분	설치근거	설치연도	존속기한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8.9.)	2008년	없음
세월호피해 지원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7항 및 시행령 제37조	2015년	없음

□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2008년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을 설치할 당시부터 설치 근거 법령 등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임시조직을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은 2022년 1월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의 설치 근거인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개정해, 종전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를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조정대상을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반환·공여사업’까지 확대하였음에도 동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을 훈령에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주한미군기지지원단과 세월호피해지원단의 업무 추진실적,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직제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임.

6.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⁵²⁾: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 처리 부적정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체계 공고화, 체계적·실효적인 ODA 전략·정책 마련 및 사업 심사·조정, 유·무상 및 양·다자 사업 연계, 평가 등을 통해 ODA 통합·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8억 9,100만원 중 27억 4,100만원(94.8%)이 집행되고, 1억 5,000만원(5.1%)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 획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 용 등	예 산 현액	집 행 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2,870	2,870	21	22 △ 22	2,891	2,741	-	150	2,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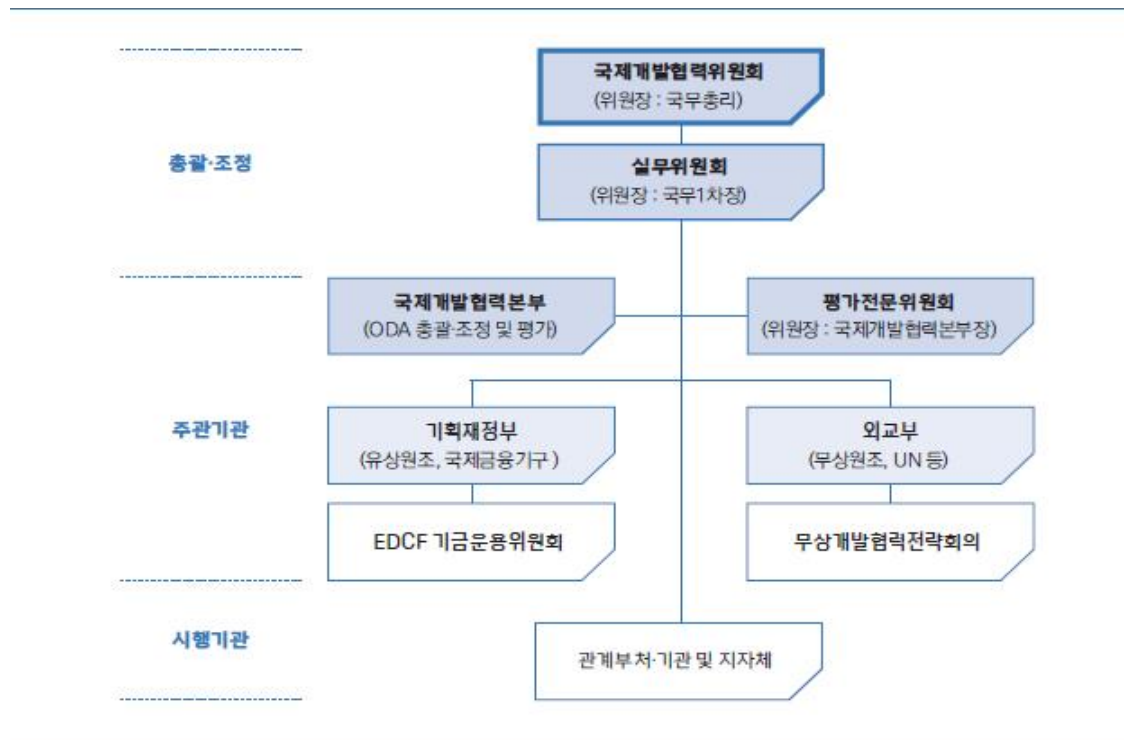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주관기관-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정책기구임. 또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

52) 세부사업: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7035-306)

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사업 발굴, 추진, 평가를 위한 심사·점검을 실시하고,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함.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⁵³⁾>



- ODA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은 ‘시행기관’이라고 하는데, 2023년 기준 45개 시행기관이 1,840개의 ODA 사업을 수행하였음. 주요 시행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과 관리를 위탁받아 유상원조를 수행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은 외교부장관의 감독 아래에 무상협력 사업을 시행함.⁵⁴⁾

53) 「2021-2023 ODA 백서」, p.51

54) 「2021-2023 ODA 백서」, p.52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전체 사업의 유형·대상지역·대상분야 간 비중을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함.

□ 우리나라의 2024년도 확정 예산기준 총 ODA 규모는 6조 2,629억원으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⁵⁵⁾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의 목표치 6조 4,000억원⁵⁶⁾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5년도 ODA 사업을 위해 총 6조 7,972억원⁵⁷⁾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임.

<연도별 ODA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요구액)
총ODA(십억원)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6,797.2
양자간원조 비중(%)	2,493.8 (77.9)	2,775.0 (81.0)	2,926.1 (77.9)	3,115.7 (79.1)	3,673.9 (76.9)	5,128.2 (81.9)	5,725.4 (84.2)
유상원조 비중(%)	1,141.2 (45.8)	1,184.9 (42.7)	1,258.2 (43.0)	1,230.5 (39.5)	1,503.0 (40.9)	2,032.0 (39.6)	2,211.1 (38.6)
무상원조 비중(%)	1,352.6 (54.2)	1,590.1 (57.3)	1,667.9 (57.0)	1,885.2 (60.5)	2,170.9 (59.1)	3,096.2 (60.4)	3,514.3 (61.4)
다자간원조 비중(%)	706.5 (22.1)	651.9 (19.0)	828.2 (22.1)	822.6 (20.9)	1,103.2 (23.1)	1,134.7 (18.1)	1,071.8 (15.8)

(자료: 국무조정실)

55)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1. 1. 20) 의결안건(제36-1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56) 2019년 총 ODA규모 3.2조 대비 2배인 6.4조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움

57)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4. 6. 26.) 의결안건(제50-1호),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 검토의견

(1) 연간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 처리 부적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는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국회의 적시성 있는 검토가 어려우므로 국무조정실은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민간전문가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임.⁵⁸⁾

□ 위원회는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한 1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⁵⁹⁾하고, 필

5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 현재,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59)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은 각각의 ODA 사업에 대해 ODA 적격성, 수원국과의 협의 여부, 대외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① 주관기관의 분야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함으로써 다음 연도 ODA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②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음 연도에 시행이 가능

요한 경우 이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가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해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이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⁶⁰⁾

- 종합시행계획에는 대·내외 사업추진 여건,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당해연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 개요 등이 반영됨. 당해연도에 추진되는 사업목록은 붙임자료의 형태로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며, 시행기관, 사업명, 사업대상국, 총사업 예산 및 기간, 해당연도 확정 예산 등이 명시됨.

- 그런데, 종합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한 확정 종합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1~2월경 국회에 보고되었지만, 이 종합시행계획의 수정과 관련된 보고는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 ODA 사업목록이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침. ③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ODA 사업은 확정예산 기준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되며, ④ 정부는 다음 연도 ODA 사업목록을 연도별 ODA 종합시행계획에 첨부하여 공개하고 있음. (「2021-2023 ODA 백서」, p.56-57)

6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종합시행계획 국회 보고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종합시행계획 (확정)	○	○	○
종합시행계획 (수정)	×	×	×

□ 개정 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대해서만 국회 보고의무를 부과한 반면, 2020년에 전부개정된 법률에서는 위원회에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고, 연도 중 변화를 반영한 ‘수정’ 종합시행계획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신·구 조문대비표 〉

개정 전	2020. 5. 26., 전부개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u>종합시행계획</u> (이하 생략)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u>종합시행계획</u>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u>종합시행계획을 확정</u> 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⑧ <u>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u>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u>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u>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은 ① 중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이 있는 경우 각 시행기관의 개별적인 판단이 아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ODA사업과 관련된 위원회의 통합·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② 대규모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시행기관이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음에도 종합시행계획의 수정없이 시행기관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사업을 변경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위원회는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추진된 ODA 사업 현황을 2021년 1월 점검하고⁶¹⁾, 이 미의결 사업들의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⁶²⁾을 실시한 바 있음. 또한, 2021년도 11월에는 해당 연도의 신규사업 수요 및 중요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ODA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차년도 종합시행계획(2022.1.의결)에 반영하였음.⁶³⁾

○ 한편, 2023년 8월 감사원은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61) 2020년도 미의결 사업 현황: 총 3개 기관에서 20개 사업, 3,922억원 집행

6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미의결 사업 관리 강화방안 연구’, 2021년도 연구용역, 국무조정실

63) <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련 보도자료(2022.1.27.) 중 발췌 >

추진한 기관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는 한편,⁶⁴⁾ ODA사업의 중대사항 변경 시에 적절한 심의·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음.⁶⁵⁾

□ 이에 2023년 2월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또는 종합시행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사업대상국이나 사업예산을 크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변경⁶⁶⁾이 있는 경우,

○ ① 각 사업시행기관이 주관기관⁶⁷⁾에 검토를 요청하여 ② 주관기관의 승인 후 그 변경사항을 국무조정실과 공유하고, ③ 해당 연도 3/4분기에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되, ④ 그 변경사항은 ‘다음 연도’ 초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 지침」(위원회 내부기준)을 마련하였음.⁶⁸⁾

※ '21년 종합시행계획 수립('21.1.20, 제36차 국개위) 이후 ▲중요한 신규 사업수요 ▲연내 집행곤란 사업의 전용 필요성(미안마 쿠데타) 등 일부 사업계획 변경사항 발생
⇒ 시행기관별 사업계획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ODA 사업계획 수정('21.11월, 제3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1년 최종 확정액 = 3조 7,101억원(당초 확정액) + 442억원(예산전용 및 예비비 순증)

64) 감사원 감사보고서(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실태), 2023.8.: 2022년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3년도 종합시행계획 의결 시에 사업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산업진흥원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ODA사업목록에서 제외했음에도, 산업진흥원은 해당 사업을 2023년도에 그대로 추진하였음. 산업부는 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에 2023년도 종합시행계획 수정을 요청했으며, 2023년 2월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에 해당 사업을 반영함.

65) 감사원 감사보고서(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실태), 2023.8. P.22

6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 지침」에 따른 중대한 변경의 예시

- (무상사업) 사업대상국 변경, 사업지 변경, 사업 철회, 총사업비 20% 초과 변경
- (유상사업) 대륙별 지출 변경 등 기존 사업 수행의 연장선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

67) 유상사업의 주관기관은 기획재정부이며, 무상사업의 주관기관은 외교부임.

6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 지침」/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4-1호), 2023.2.9.

□ 종합시행계획은 1년 단위 사업계획이므로 해당 연도 사업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연내에 이를 반영하여 의결한 후 국회에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 국무조정실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ODA사업 변경사항을 ‘차년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 수정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률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실제로, 2023년도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중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사업의 경우, 2023년도 확정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6개의 신설사업⁶⁹⁾을 시행했는데, 이렇게 계획되지 아니한 신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내용을 2023년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수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⁷⁰⁾

□ 이와 같이, 해당 연도 종합시행계획의 수정사항을 차년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보고하는 경우, 국회는 해당 연도의 총괄적인 ODA 사업 수정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적시성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음.

69) 기획재정부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사업 중 종합시행계획 반영 없이 시행된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당초계획	수정	결산
방글라데시 기후탄력적 통합개발 프로그램차관	-	121,500	117,558
인도 복합운송 및 통합물류 개선 프로그램 I	-	135,000	130,080
인도네시아 산업현대화 및 무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77,508	77,508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 개선 프로그램III	-	78,474	78,474
라오스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	2,027	2,012
에콰도르 에너지전환·투자촉진 지원 프로그램	-	66,840	66,840
합 계	-	481,349	472,472

70)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부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p.225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예산 전용이나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실시 등 ‘사업 변경’을 이유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필요는 없어,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그러나, 5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종합시행계획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유형·대상지역·대상분야 간 비중을 고려해 결정되고, 예산 전용 등을 통한 신규사업 실시 등 사업 변경은 종합시행계획이 당초 설정한 사업 유형, 대상지역 등의 변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내용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임.
- 정부는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⁷¹⁾하여 2024년도 확정 예산기준 총 6조 2,62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ODA사업의 특성상 국회가 그 사업의 적절성 등을 적기에 평가할 수 없으므로 ODA 규모 확대에 걸맞은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도 높아짐.
- 국무조정실은 ‘위원회의 ODA 총괄·조정기관으로서의 지위 강화’ 및 ‘ODA사업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같은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신규사업 추진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도 내에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하고, 이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71) ODA 예산(증가율) : ('22년) 3.94조원 → ('23년) 4.78조원(21.3%) → ('24년) 6.26조원(31.1%)

(2)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미흡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평가 결과를 국민 접근성이 높은 홈페이지 화면에 배치하고, 공개 시에는 사업시행기관 명칭 및 사업내용과 그 평가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⁷²⁾는 ODA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평가의 종류에는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는 상위평가에 해당하는 ‘위원회평가’가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위원회평가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⁷³⁾(국무조정실예규)을 마련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정

7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지침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3)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국무조정실예규) 제6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실시기관 중 시행기관별로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체평가”라 하고, 평가전문위가 정책·전략·국별·분야별·주제별·형태별·프로젝트·프로그램별로 대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위원회평가”라 한다.

② 평가실시기관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

나. 국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분야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

라. 주제별 평가 : 양성평등, 인권,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책 및 전략평가, 국별 평가, 기관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⁷⁴⁾ 추진과제로서 ‘성과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 방침을 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위원회의 직접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ODA 정책·사업 관련 정보(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명시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사업시행기관의 ODA 성과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 평가에 해당하는 기관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2021년도에는 진단기준 마련 등 제도 설계를 하고, 2022년부터 기관역량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관리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관역량진단 및 컨설팅을 위해 집행한 용역비는 4억 3,700만원임.

대한 평가

마. 형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평가

바.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사. 기관평가: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사업, 평가체계 등에 대한 진단 평가

아. 다자협력사업평가: 성과관리가 가능한 다자성양자사업에 대한 평가

자. 평가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74)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1. 1. 20) 의결안건(제36-1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기관역량진단 관련 용역경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구용역 주제	계약금액
2021	2021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연구용역 - ODA시행기관에 대한 역량진단 모델 개발 - 시행기관 성과관리 역량 강화 지원	178,181
2022	2022년 ODA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124,727
2023	2023년 ODA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133,636
합 계		436,544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그런데, ODA KOREA 홈페이지⁷⁵⁾에서 ODA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사업시행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위원회평가 결과는 위원회 의결사항 파일에서 별도로 검색해야만 확인이 가능하여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또한, 기관역량진단의 경우, 전체 평가대상 기관 중 A등급 기관 ○개, B등급 기관 ○개 등 전체 평가결과를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개별 사업시행기관의 명칭은 ○○○으로 처리하여, 어떤 기관이 어떤 평가결과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

□ 이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의 ‘성과관

⁷⁵⁾ www.odakorea.go.kr

리 및 정보공개 강화' 방침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⁷⁶⁾의 취지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 부합될 수 있도록, ODA사업과 관련된 위원회평가 결과를 국민 접근성이 높은 홈페이지 화면에 배치하고, 공개 시에는 사업시행기관 명칭 및 사업내용과 그 평가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7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⁷⁷⁾: 중단 예정인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 사업비 편성 후 전액 불용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은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0억 1,800만원 중 73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1.2%)되고, 16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8,843	175	±30	9,018	7,323	-	1,694	8,984

(자료: 국무조정실)

77) 세부사업: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

2) 검토의견

(1) 중단 예정인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기능개선 사업비 편성 후 전액 불용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2024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2023년도 예산에 기능개선 사업비가 반영된 후 전액 불용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산편성 시 추진 필요성, 사업 간 연계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2022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되었으나, 정책·공간·상담과 관련된 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로 사업을 이관하였음.

○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이던 온라인 청년센터는 일자리 정책 중심의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반면, 국무조정실에서는 일자리 정보에 더하여 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하나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전액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었는데, 2023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37억 7,500만원 중 25억 2,500만원이 집행(집행률 66.9%)되고, 12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국무조정실			출연기관(한국고용정보원)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3,775	2,525	1,250	2,525	2,493	32	-

(자료: 국무조정실)

○ 불용액 12억 5,000만원은 전액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 사업비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온라인 청년센터가 2024년까지만 운영된 후 2025년부터는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으로 대체될 예정임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음.

□ 그러나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은 2022년 5월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2022년 11월에 수립되어 2022년부터 국무조정실 내부적으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2023년도 예산으로 동 플랫폼과 유사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후 전액을 불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통합 예정인 온라인 청년센터의 기능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함.

○ 구체적으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 사업은 한국고용정보원과 중앙부처·지자체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청년정책의 변동(신규 등록·변경·폐지 등)이 온라인 청년센터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임.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5⁷⁸⁾에 근거하여 청년의 관심분야 및 여건(소득, 거주지역 등)에 부합하는 청년 정책을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청년정책 신청까지 가능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정책 데이터를 수집 및 축적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 사업과 중복되므로 당초부터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산편성 시 추진 필요성, 사업 간 연계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청년DB 가입 및 활용 실적 저조

당초 계획 대비 청년DB의 가입 및 활용 실적이 부진하므로, 국무조정실은 청년DB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8) 「청년기본법」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 “청년DB”는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이 프로필을 등록하면 정책 담당자가 정책에 필요한 청년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과 정책 담당자를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으로, 「청년기본법」 제15조의2⁷⁹⁾에 근거하여 2022년 구축예산 2억 8,9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23년 1월 30일에 개시하였음. 2023년도 청년DB 관련 예산으로 운영비로 1억 1,800만원이 편성되고, 전액 집행되었음.

〈청년DB 개요〉

구 분	내 용
근거	·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 국정과제 92 :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역할	·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년과 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청년 참여 플랫폼”
대상	· 우수한 경력을 쌓은 청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개선 활동에 참여한 경험 등이 있는 만19세~39세의 청년* * ① 국내외 주요 대회에 참여 혹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청년 ② 지역·국가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청년 ③ 관심분야 교과를 1년 이상 이수한 청년, ④ 관심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청년 등
구축기간	· 2022.4.~12.
구성	· 대민망(2030db.go.kr): 청년들이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 · 업무망(info.2030db.go.kr): 중앙·지자체 담당자가 접속권한 승인 후, 청년을 직접 검색
현황	· 구축기간: 2022.4.~12. · 시범운영: 2023.1.1.~1.10. · 정식 오픈: 2023.1.30

(자료: 국무조정실)

79)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2023년 청년DB의 가입 및 활용실적을 보면, 5년간 10만명의 청년 패널을 확보하여 정책점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당초 계획⁸⁰⁾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비해 청년DB의 가입대상을 확대(만 19세 이상, 39세 이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기준 청년DB 회원가입 인원은 17,399명이고, 그 중 정책담당자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필 등록 회원 수는 9,711명에 불과함.

〈청년DB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현황〉

(단위: 명)

구분		성 별			연 령 (만 나이)				
		합계	남	여	합계	19~24	25~29	30~34	35~39
'23.12월 말 기준	회원가입 현황	17,399		-	17,399				-
	프로필 등록현황	9,711	5,125	4,586	9,711	1,983	3,139	2,995	1,594
'24.4월 말 기준	회원가입 현황	21,471		-	21,471				-
	프로필 등록현황	11,761	6,011	5,750	11,761	2,206	3,768	3,716	2,071

(자료: 국무조정실)

○ 또한, 프로필 등록 청년은 청년DB를 통해 각종 위원회의 청년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선정되어 활동할 수 있는데, 2023년에 청년DB를 통해 공공기관·지자체 등과 연결되어 활동한 건수가 총 385건으로 프로필 등록 회원(9,711명) 중 3.9% 수준임.

8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제4차 정례브리핑(2022.4.27.), “10만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부처·지자체 청년 패널로 활용”

〈2023년 청년DB를 통한 활동 내역〉

(단위: 명)

기관	활동 구분	인원
기재부 등 24개부처	청년보좌역	29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3
	청년정책조정실무위원회	5
	2023년 청년정책 평가단	7
	새만금위원위원회	2
기획재정부	적극행정위원회	1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2
	2030자문단	20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2
	2030자문단	21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3
	2030자문단	19
환경부	2030자문단	20
농림식품축산부	2030자문단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자문단	20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20
법무부	2030자문단	20
외교부	2030자문단	23
산업통상자원부	2030자문단	20
보건복지부	2030자문단	5
개인정보위원회	2030자문단	20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13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20
국민권익위원회	2030 국민참여 모니터단	5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포럼 청년마당	3
부산광역시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	2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식재산위원회	1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	1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	1
경상남도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1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1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제3기 청년참여기구	54
합 계		385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2023년은 청년DB 운영 첫 해로 청년층의 청년DB에 대한 인식 및 효용감 등이 부족했고, 자료 축적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함.

□ 다만, 청년DB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운영비로 매년 약 1억 1,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국무조정실은 청년DB가 청년층의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⁸¹⁾: 예비비 배정 및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포털을 운영하여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억 2,360만원 중 2억 4,520만원 (57.9%)이 집행되고, 1억 7,84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	-	424	424	245	-	178	729

(자료: 국무조정실)

□ 2022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7월에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⁸²⁾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⁸³⁾

81) 세부사업: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7035-321)

8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국가위원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UN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원회 설치 권고('92년 리우회의)와 국내 시민사회·언론·학계·경제계 등의 요구에 따라 2000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⁸⁴⁾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후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그 명칭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⁸⁵⁾되었음.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음.
- 동 법률체계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⁸⁶⁾이 되었고, 종전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되었음.⁸⁷⁾
- 이후, 경제·환경·사회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하여 포괄적인 상위개념이라는 점을 고려

8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84)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8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8612호, 2007. 8. 3., 제정)

제15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86) 「녹색성장법」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후변화대응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87)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⁸⁸⁾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위원회는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었음.

-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부칙에서는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 종전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정된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보도록 하였음.⁸⁹⁾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추진 연혁〉

근거	소속 (소관)	기수	인원	기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대통령 (환경부)	1기	33명	2000.09. ~ 2002.09.
		2기	34명	2002.10. ~ 2003.06.
		3기	76명	2003.12. ~ 2005.12.
		4기	32명	2006.05. ~ 2008.0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대통령 (환경부)	5기	30명	2008.05. ~ 2009.04
지속가능발전법	환경부장관 (환경부)	6기	24명	2010.09. ~ 2012.09.
		7기	34명	2012.11. ~ 2014.11.
		8기	32명	2015.09. ~ 2017.08.
		9기	33명	2018.08. ~ 2020.08.
		10기	32명	2020.12 ~ 2022.1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대통령 (국무조정실)	11기	-	미구성

(자료: 국무조정실)

88)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2021.12., 의안번호 2113765) 제안이유

8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부칙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2) 검토의견

(1) 국가위원회 구성 사전준비 미흡에 따른 예비비 집행실적 부진

국무조정실은 지출이 미리 예측되었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예산 과다추계 및 국가위원회 구성 지연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불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민간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전략, 지속가능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두며,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⁹⁰⁾

9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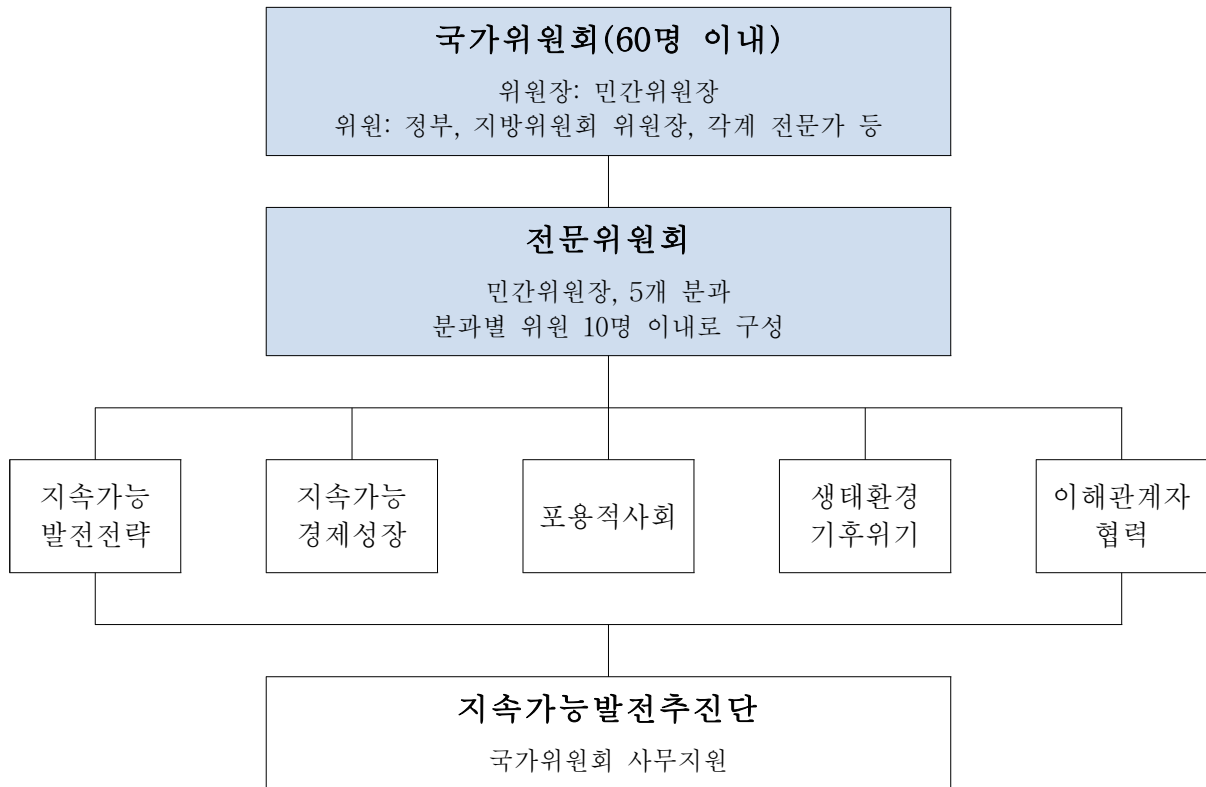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구성〉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하였으며, 2023년 3월에 ① 회의수당, 인쇄비, 회의장·장비 임차료 등 국가위원회 운영 9,360만원, ②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을 위한 관리용역비 8,000만원, ③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를 위한 일반연구비 5,000만원, ④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조사 및 정책연구 포럼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2억원 등 예비비 총 4억 2,36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하였음.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사업 예비비 배정내역〉

(단위: 천 원)

내역	세목	산출근거	배정액(천 원)	
① 국가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210-01)	◦ 국가위원회 운영 - 본회의 수당(대면): 200천 원×30명×1회 - 본회의 수당(서면): 150천 원×30명×1회 - 행정계획 검토: 150천 원×10명×20회 - 회의자료 인쇄: 20천 원×50부×1회 ◦ 전원위원회 운영 - 본회의 안건 검토(서면): 150천 원×10명×5분과×2회 - 행정계획 검토: 150천 원×10명×20회	86,500	93,600
	임차료 (210-07)	◦ 회의장 및 장비 임차: 5,000천 원×1회	5,000	
	사업추진비 (240-01)	◦ 30천 원×70명×1회	2,100	
②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관리용역비 (210-15)	◦ 80,000천 원×1식		80,000
③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	일반연구비 (260-01)	◦ 50,000천 원×1식		50,000
④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조사 및 정책연구 포럼	민간위탁 사업비 (320-02)	◦ 200,000천 원×1식		200,000
합 계				423,600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이와 같이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을 2023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국가재정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⁹¹⁾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⁹²⁾
-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2022년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조직 신설을 협의하였으나, 정부의 인력 감축 기조⁹³⁾에 따라 협의가 중단되어 국가위원회의 조직규모 등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가위원회의 설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제정된 법률의 시행 준비를 위한 사전준비기간이 부칙 시행일 규정에 공포 후 6개월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정부의 예산안 확정까지는 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91)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9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42.)

93) 부처별 매년 정원 1% 감축 및 인력재배치 방안 발표(2022.7.14.),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2년 9월 전 정부위원회 정비(2022.9.7.)

□ 한편, 예비비 배정을 통하여 집행된 동 사업은 국가위원회의 미구성, 예비비 과다요구·배정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동 사업은 예비비 4억 2,360만원 중 2억 4,52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57.9%에 불과하였으며, 1억 7,840만원이 불용
되었음.

- 내역사업별로는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7.8%, 18.4%로 부진하였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

내역	예비비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비고
① 국가위원회 운영	93,600	7,340	86,260	7.8	◦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회의 미개최 및 참석수당 등 미집행
- 일반수용비(210-01)	86,500	4,550 ¹⁾	81,950	5.3	
- 임차료(210-07)	5,000	690 ²⁾	4,310	13.8	
- 사업추진비(240-01)	2,100	2,100	-	100.0	
②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80,000	14,700	65,300	18.4	◦ 지속가능발전포털 과업기간 축소 및 위탁방식 변경
③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	50,000	45,454	4,546	90.9	-
④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조사 및 정책연구 포럼	200,000	179,763	20,237	89.9	-
합계	423,600	245,157	178,443	57.9	

주 1)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조사 및 정책연구포럼 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수당 등

2)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관련 전문가 간담회 회의장 임차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2023년 3월 예비비 요구 시 국가위원회 구성과 무관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내역사업⁹⁴⁾뿐만 아니라 국가위원회 구성의 사전준비적 성격을 갖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 사업⁹⁵⁾, 국가위원회 구성 이후 집행이 가능한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에 대한 예비비를 일괄적으로 요구하였음.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은 2023년 8월 계약이 체결되어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국무조정실은 11월말 부처 및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가위원회 구성은 연내에 구성되지 못했으며, 이에 국가위원회 운영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었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구성 추진 경과(2024년 6월말 기준)〉

시기	추진 경과
2022.01.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2022.07.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09.	◦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 확정 및 발표(행정안전부)
2022.12.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0기 임기 종료
2023.03.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비비 배정
2023.08. ~ 2023.12.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
2023.11.	◦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2024.2. ~ 2024.6. 현재	◦ 민간 위원 후보자(안) 검증 중

(자료: 국무조정실)

94)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조사 및 정책연구 포럼

95) 국무조정실은 2022년 1월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위가 격상된 국가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연구비용 예비비를 요청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사업의 경우 10개월분의 예비비를 산정했으나, 실제 계약은 8월에 체결되어 사업기간이 약 4개월로 크게 줄었음.⁹⁶⁾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사업 추진 경과〉

시기	추진 경과
2023.03.	◦ 예비비 배정(10개월분)
2023.07.	◦ 지속가능발전포털 운영 입찰공고
2023.08.	◦ 지속가능발전포털 운영 계약 체결
2023.08.~ 2023.12.	◦ 지속가능발전포털 운영사업 추진

(자료: 국무조정실)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비비 요구시 집행가능성을 감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과거에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의 예비비 불용 문제를 지적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3년에도 국무조정실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예비비를 배정·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참고로, 최근 5년 국무조정실의 예비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이 예비비로 집행한 11개 사업 중 5개 사업의 집행률이 80% 미만 수준에 불과하여 예비비의 비효율적인 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96)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그 밖에 포털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유지·보수 등 운용비용을 절감하였다는 입장임.
(중전) 환경부 → 환경연구원 → 업체 / (변경) 국무조정실 → 업체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예비비 집행부진 관련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019	◦ 국무조정실은 시급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국회 의결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추진단 구성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시정	○ 향후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 집행 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예산을 '20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음 * '19년 예비비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19.7)에 따른 추진단 신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편성	조치완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9~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예비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세부사업	예비비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9	생활SOC추진단 운영	1,711	1,223	20	468	71.4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674	609	-	65	90.4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1,025	864	-	161	84.3
2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운영	3,416	3,384	8	23	99.1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 운영	7,778	5,464	1,886	428	70.2
202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509	484	-	25	95.1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708	694	-	14	98.0
2022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336	325	-	10	96.9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3,632	2,861	220	551	78.8
2023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424	245	-	178	57.9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 위원회 운영	658	499	-	158	75.9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면밀한 예산 추계 등을 통하여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국가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공백 발생

2024년 6월말 현재까지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국가위원회의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국가위원회의 업무로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심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점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및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 계획에 대한 검토와 그 결과의 관계 기관 통보,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음.⁹⁷⁾

9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러나, 종전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임기가 종료된 2022년 12월 이후부터 2024년 6월 말 현재까지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국가위원회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⁹⁸⁾ 및 시행령 제9조⁹⁹⁾는 중앙행정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9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9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기관의 장이 국가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제10기 지속가능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2022년 12월 이후에는 국가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그 결과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기본전략 관련 행정계획 수립·변경 통보 및 검토결과 통보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수립·변경 통보	6	2	8	5	13 ²⁾	37 ³⁾
검토결과 통보	6	2	8	3 ¹⁾	-	-

주: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검토대상 행정계획이 확대(72→189개)

주1) 제10기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2022.12.3.) 이후 접수된 행정계획 2건 검토결과 미통보

주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35건, 국가수도기본계획변경안 1건, 지하수 기본계획 변경안 1건

(자료: 국무조정실)

- 또한, 2024년은 국가위원회가 2년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공표 등의 주기가 도래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위원회가 연내 구성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내실 있게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2024년 7월 현재 2024년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작성·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추진계획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주체인 국가위원회가 부재한 가운데 용역이 착수되었다는 점, 내실 있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견 요청 또는 조사·연구 의뢰¹⁰⁰⁾ 등의 제도적

10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장치가 국가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하여 활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정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9.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¹⁰¹⁾: 예비비 과다배정 후 불용 발생 부적절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은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미디어발전위원회”라 함)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억 5,800만원 중 4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9%)되고, 1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미디어 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	-	-	658	658	499	-	158	169

(자료: 국무조정실)

○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¹⁰²⁾」에 따라 2023년 4월에 설치되었음.

101) 세부사업: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7035-322)

102) 국무총리훈령 제842호, 2023.3.17. 제정

-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2인 등 정부·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전체회의는 월 1회, 분과위원회는 격주로 개최되었고, 운영 규정 제3조의 위원 임기(1년) 종료¹⁰³⁾ 시점인 2024년 4월에 운영이 종료되었음.

2) 검토의견

(1) 예비비 과다배정 후 불용 발생 부적절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은 연도 중 지출할 시급성·보충성 및 집행가능성 등이 결여된 예산을 예비비로 과다하게 배정받아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비비 요구 시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 등 예비비 편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요구에 앞

103)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2. 미디어·콘텐츠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서 ①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 불가능성), ②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시급성), ③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보충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은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출범(2023년 4월)에 따른 운영비·용역비 소요 등을 사유로 2023년 5월에 예비비 6억 5,800만원을 배정받았음.

〈2023년 국무조정실 일반예비비 배정 조서〉

(단위: 천원)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장(분야)		예비비 지출액	내역
		세항 (단위사업)	목		
01 국정운영				657,579	
	7000 국무총리실			657,579	
		7035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657,579	
			110 인건비	18,500	▪ 행정실무원 1명 보수
			210 운영비	262,179	▪ 회의참석수당, 외부회의실 임차료 등
			220 여비	69,100	▪ 위원회 회의지원 및 해외 정책사례 조사 등
			240 업무추진비	20,700	▪ 세미나·간담회·자문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50 직무수행경비	18,900	▪ 부서장 등 직책수행경비
			260 연구용역비	220,000	▪ 미디어·콘텐츠 발전방안 관련 정책연구용역
			320 민간이전	1,700	▪ 행정실무원 4대 보험 및 국민연금 지급금
			420 건설비	46,500	▪ 외부회의실 공사비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러나 동 사업 예산액 6억 5,800만원 중 1억 5,800만원이 불용(불용률 24.0%)되었는데, 특히 국외업무여비와 공사비 불용액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먼저, 국외업무여비(220-02목)로 편성된 3,9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국무조정실은 예비비 요구 시에는 선진국(미국) 미디어 규제에 대한 자료수집·심층분석을 위해 국외업무여비를 편성¹⁰⁴⁾하였으나, 위원회 내부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해외 현장방문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로 제한적으로 배정되어야 함에도, 연도 중 해외 현장방문의 필요성이 없어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불용된 것은 예산 집행지침 상 시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공사비(420-03목)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서울회의실의 전기·통신·소방·인테리어 등 공사를 위해 4,350만원, 미디어발전위원회 지원단 활동을 위한 세종사무실 공사비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예상보다 서울회의실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었고, 세종사무실 공사는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에서 지출됨에 따라 2,600만원이 불용(불용률 55.3%)되었음.

104) <국외업무여비(220-02목) 산출내역>

□ 미국 정책사례 조사 3,930만원
○ 항공료: 833만원 × 3인 + 351만원 × 2인 = 3,201만원
○ 숙박비: (\$223 × 3인 + \$176 × 2인) × 3인 × 1,290 = 395만원
○ 일식비: (\$142*3인+\$111*2인)*4일*1,290 = 334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관련 2023년도 공사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자금이체일자	지출액	지출건명	수령인명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250)	2023-07-18	2,959	세종사무실 네트워크 공사	삼광전기통신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위원회 운영 (7035-322)	2023-08-10	2,354	서울회의실 전기 공사	(주)이레이앤씨
	2023-08-10	1,254	서울회의실 통신 공사	삼광전기통신
	2023-08-10	14,520	서울회의실 OA 공사	준오피스
	2023-08-10	2,634	서울회의실 소방 공사	주식회사 피스코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러나 세종사무실 공사의 경우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함에도 미디어발전위원회 추진단 운영을 위한 공사비를 예비비로 배정한 점은 예산 집행지침 상 보충성 요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¹⁰⁵⁾ 서울회의실 공사비 또한 예비비 요구 시 실소요액에 비해 과다계상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예비비 요구 시 연도 중 지출할 시급성·보충성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19회계연도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시

105) 더구나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 사업은 2023년도 예산현액 64억 1,100만원 중 57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9,2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10.8%에 달함.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6,489	-	△78	6,411	5,719	-	692	6,365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에 대하여 예비비의 집행가능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된 바 있음.¹⁰⁶⁾

(2) 임시조직의 서울회의실 별도 조성을 위한 예산지출 과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서울회의실 조성·원상복구 및 임차를 위해 약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서울회의실의 사용기간(9개월)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임시조직의 회의장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2023년도 임차료(210-07목)와 공사비(430-03목) 배정액 중 대부분은 세종시의 미디어발전위원회 지원단 사무실과 별도로 서울에 회의실을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 및 회의장 공사비임.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사업 임차료 및 공사비 산출내역>

임차료(210-07목)	공사비(430-03목)
8,580만원	4,650만원
○ 공청회 등 장소 임차료 750만원(150만원×5회) ○ 서울회의실 임차료 6,000만원(750만원×8월) ○ PC등 전산장비 임대(서울회의실) 330만원 ○ 가전제품 임대(서울회의실) 385만원 ○ 사무용가구 임대 1,115만원(139만원×8월)	○ 서울회의실 공사 4,347만원 ○ 세종사무실 공사 303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106) ○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국무조정실은 시급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국회 의결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추진단 구성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시정)

○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국무조정실은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출할 때 당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서울 회의실 개요 및 전경〉

- (서울 회의장) (주)동원 리소스와 임대차 계약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15, 동원빌딩 6층
 - 면적 : 전용 44평(147㎡), 공용 37평, 합계 88평
 - 용도 : 회의 준비공간, 소회의실 겸 위원 대기실, 회의장 1개소 (분리)
 - 월임대료 : 임대료 5,346천원, 관리비(약 2,228천원) 등 총 7,574천원
 - 계약기간 : '23.7.1. ~ '24.4.30.

서울 회의실 전경



(자료: 국무조정실)

○ 미디어발전위원회에 서울회의실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민간위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잦은 회의 빈도를 고려한 민간위원의 접근성 및 대규모 인원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상설회의장을 서울에 임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1년간 운영된 한시조직의 회의장 조성을 위해 2023년에 2,08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였고, 2024년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회의장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비 1,562만원을 집행¹⁰⁷⁾하였으며, 10개월분의 임차료로 7,574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1억 1,216만원가량이 소요되었는데, 서울회의실의 실제 사용기간(9개월; 2023년 7월~

¹⁰⁷⁾ 서울회의장 원상복구 예산은 2024년 동 사업 공사비(430-03목)로 다음과 같이 집행되었음.

2024년 3월)을 고려할 때 별도 회의장 조성 후 원상복구를 위한 예산 등을 투입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음.

- 실제로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서울회의장 조성(2023.7.12.) 전에는 서울청사 회의실,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 한국콘텐츠진흥원 CKL 기업지원센터 회의실 등에서 임차료 집행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 별도 회의장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회의장 조성 전 미디어발전위원회 전체회의·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참석자	개최장소	임차료 집행액
전체회의	'23.4.17 (1차)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	서울청사 대회의실 (9층)	-
	'23.5.18 (2차)	정부위원 4명, (이하 대참 포함) 민간위원 14명	서울중앙 우체국 스카이홀(21층)	897.6
	'23.6.15 (3차)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3명	메이필드 호텔 이원홀	4,618.5
분과위원회	'23.4.25 (1차)	법제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서울청사 회의실(10층)	-
		산업 민간위원 6명, 부처 국·과장 4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13층)	-

〈서울회의장 원상복구 관련 2023년도 공사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자금이체일자	지출액	지출건명	수령인명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 운영 (7035-322)	2024-04-09	12,760	미디어TF 서울 회의장 건축 원복 공사	준오피스
	2024-04-09	880	미디어TF 서울 회의장 전기 원복 공사	(주)이레이앤씨
	2024-04-09	1,980	미디어TF 서울 회의장 소방 원복 공사	주식회사 피스코

(자료: 국무조정실)

구분			참석자	개최장소	임차료 집행액
	'23.5.9 (2차)	법제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13층)	-
		산업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17층)	-
	'23.5.23 (3차)	법제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17층)	-
		산업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17층)	-
	'23.6.13 (4차)	법제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콘진원 CKL 기업지원센터 회의실(11층)	-
		산업	민간위원 7명, 부처 국·과장 4명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17층)	-
	'23.7.4 (5차)	통합	민간위원 12명 (법제 5, 산업 6), 부처 국·과장 4명	콘진원 CKL 기업지원센터 회의실(11층)	-

(자료: 국무조정실)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향후 임시조직의 별도 회의실 조성 예산 편성 시
청사·유관기관 회의실을 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0.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의 운영 장기화 부적절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은 기존 반부패 조직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소홀하거나 점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정부패 소지 분야에 대하여 시정·예방과, 부패·부조리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적 관점의 제도개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7억 4,000만원 중 7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6%)되고,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40	-	±48	740	715	-	25	709

(자료: 국무조정실)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함)은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관련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다부처·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됨.

- 추진단 단장은 국무1차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파견검사로 하며,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경찰청과 LH·금융감독원 등 파견인력이 부패예방 업무를 담당함. 추진단은 2023

년에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점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점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 점검, 지방교육재정 분야 점검, 전력 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확대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검토의견

국무조정실은 훈령을 일곱 차례 개정하여 부패예방추진단을 설치 이후 약 10년간 운영하는 등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부조직관리지침」·감사원 감사 결과 및 국회 결산 시정 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조직관리지침」(행정안전부 지침)¹⁰⁸⁾에 따르면, 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설치 근거에 명시하고, 존속기한 경과 시에는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 기능을 종료시키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2년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국무총리 훈령 이상의 법령으로 2020년 이전에 설치된 임시조직은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음.¹⁰⁹⁾

○ 또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은 기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사실상 상설

108) 정부조직관리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행정안전부 지침

109) 부패예방추진단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이나, 「정부조직관리지침」이 임시조직 연장 시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2020년에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의 사례와 같이 횟수 제한 없이 임시조직을 계속 연장하여 사실상 상설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됨.

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추진단 설치 당시 1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도 7회나 추가 연장하여 약 10년간 운영하는 등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추진단의 추진연혁을 보면, 국무조정실은 2014년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 관련 대책의 기획·분석·시행 및 공직부패 점검·관리를 추진하고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1호, 2014.8.13. 제정)」에 기반하여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한시 운영조직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신설함.

- 국무조정실은 부패근절 노력의 지속 필요성을 감안하여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말까지 1차 연장하고, 2016년 12월에는 2017년 12월 말까지로 2차 연장하였음.

○ 이후 2017년 8월 명칭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에 부패의 예방 및 감시를 추가하였으며, 활동기한을 2019년 12월 말로 3차 연장하였음.

- 2019년 말에는 정규직제화 논의를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2020년 3월에는 활동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하면서 명칭을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 변경하였음. 이후

2022년 1월에는 부패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대상 부정부패 관련 자문 제공기능을 신설¹¹⁰⁾하고, 활동기한을 2024년 12월 말로 6차 연장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활동기한을 2027년 12월 말로 7차 연장하였음.

〈부패예방추진단 활동기한 관련 연혁〉

구분	제·개정시기	활동기한	개정사항	명칭
제정	2014.8.13.	2015.7.31.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1차 연장	2015.7.23.	2016.12.31.	활동기한 연장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2차 연장	2016.12.7.	2017.12.31.	활동기한 연장 및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3차 연장	2017.8.4.	2019.12.31.	활동기한 연장, 명칭 변경 및 부패의 예방·감시기능 추가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4차 연장	2019.12.31.	2020.3.31.	정규직제화 논의를 위해 활동기한 연장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5차 연장	2020.3.9.	2022.6.30.	활동기한 연장 및 명칭 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6차 연장	2022.1.21.	2024.12.31.	부패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자문기능 신설 및 활동기한 연장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7차 연장	2024.7.2.	2027.12.31.	활동기한 연장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자료: 국무조정실)

□ 추진단은 활동기한이 단기성으로 재차 연장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예비비(2017~2019년, 2022년)로 편성되었고, 정규직제화되지 않은 채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현원 39명 중 파견기관에서 공식 충원이 불가능한 비별도 파견인력이 41.0%(16명)에 달함.

110)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조(부정부패 관련 제도개선 자문의 제공) ① 추진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관련 대책을 수립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려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추진단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최근 7년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7년	-	-	±5	674	674	612	90.8	-	62
2018년	-	-	±18	611	611	572	93.5	-	39
2019년	-	-	±15	674	674	609	90.3	-	65
2020년	733	-	±50	-	733	677	92.4	-	56
2021년	813	-	±3	-	813	752	92.5	-	61
2022년	416	-	±24	336	752	687	91.4	-	64
2023년	740	-	±48	-	740	715	96.6	-	25

(자료: 국무조정실)

〈2023년 부패예방추진단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파견(직제 미반영)			
			별도	비별도		민간
			중앙	중앙	지자체	
총괄기획국	-	23	4	8	2	9
사회경제국	-	16	6	5	1	4
계	-	39	10	13	3	13

(자료: 국무조정실)

□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국무조정실 기관 정기감사(2022년 6월)¹¹¹⁾ 시
설치 당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도 이를 2회 이상 연장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운영 중인 임시조직을 폐지하도록 통
보하였으며, 매년 국회 결산 심사 시 훈령 개정을 통한 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직제 반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¹¹²⁾

111)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① 설치 당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3년 이상 운영 중이거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도 이를 2회 이상 연장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운영 중인 임시조직
은 폐지하고(통보), ② 앞으로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거나 직제상 상시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직제에 규정되지 않은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존속기한을 설치 근거에 명시하고, 존속기한 경과 시 해당 임시조직을 폐지하거나 존속기한을 연
장하는 경우라도 연장 횟수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1회로 한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112) <최근 3년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 관련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을 의결한 바 있음.

- 그럼에도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 활동의 지속성 및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부패예방추진단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행정안전부에 부패예방추진단의 정규직제화를 여러 차례 요청¹¹³⁾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매년 정규직제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훈령 개정을 통한 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조직관리지침」·감사원 감사결과 및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므로, 국무조정실은 상시조직화 등 추진단 운영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구분	시정요구사항
2020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연장된 운영 기한(2022년 6월) 도래 전까지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패예방추진단의 직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주의)
2021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직제 반영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2022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부패예방 추진단이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시정)

113) 최근 3년간 행정안전부로의 정규직제화 요청: 2022년 9월, 2023년 3월, 2023년 9월, 2024년 3월

11.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¹¹⁴⁾: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경비 편성 지양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는 국무총리의 국회·정당과의 소통 활동을 보좌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2억 7,000만원 중 11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3%)되고, 7,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1,270	-	±30	1,270	1,198	-	72	984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143	-	-	143	84	-	59	143
대국민 및 시민사회 소통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108	-	-	108	108	-	-	108

(자료: 국무조정실)

114) 세부사업: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7037-302)

2) 검토의견

(1) 설치 근거가 없는 시민사회위원회의 운영 경비 편성 지양 필요

시민사회위원회는 2022년 10월 폐지 이후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매년 운영경비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동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와 관련성이 낮은 간담회 등에 예산액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법령상 설치근거가 없고 미구성된 위원회의 운영경비 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시민사회위원회 운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임.

○ 시민사회위원회는 2013년부터 설치되었고, 1기~4기 위원회가 2년씩 운영¹¹⁵⁾되었음. 1~3기 위원회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고, 4기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였으며 정부위원 9명과 민간위원 27명으로 구성되었음.

□ 그런데 2023년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의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 1억 4,300만원 중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58.7%)되고, 5,900만

115) 1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13. 6. 20.~2015. 6. 19., 2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15. 8. 26 ~2017. 8. 25., 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17. 11. 20.~2019. 11. 19., 4기 시민사회위원회: 2020. 7. 3.~2022. 7. 2.

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 세부 산출내역〉

-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 1억 4,300만원
 - 회의 참석수당 및 자문사례금 7,100만원
 - * 전체위원회 3,600만원, 분과위원회 2,600만원, 기타 900만원
 - 소모품 구입 및 자료 인쇄 1,150만원(40회×28.7만원)
 - 위원회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 임차료 650만원(4회×162.5만원)
 - 시민사회위원회 관련 업무협의 2,500만원(7회×30만원×12월)
 - 위원회 운영, 시민사회 소통 등 국내여비 2,930만원(10명×8.1만원×36회)

(자료: 국무조정실)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시민사회위원회가 2022년 10월 폐지된 이후 2024년 7월 현재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먼저,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새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나, 이는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위원회 폐지를 권고¹¹⁶⁾한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 경과를 보면, 시민사회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민사회위원회의 운영 성과 및 정부위원 참여 저조 등의 사유로 폐지의견이 제시('22.9.7.)된 후,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 법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폐지('22.10.4.)되었음.

1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 폐지·통합」, 2022.9.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경과〉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5월 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
- 現정부 국정과제(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등) 및 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시민사회위원회*'가 정비 대상에 포함
 - * 「정부위원회 민관합동진단반(행안부)」 조사 결과 등을 반영, 同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22.9.7)
-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근거법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22.10.4)
 - ※ 관계기관 협의('22.9.1~16) → 입법예고(9.7~16)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9.27) → 폐지령 공포(10.4)

(자료: 국무조정실)

○ 이후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다시 운영할 계획으로 매년 1억 4,300만원의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4기 시민사회위원회와 차별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점에서 시민사회위원회 신규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시민사회위원회는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음에도 매년 운영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117)는 행정

1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 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를 필요로 함.

- 이에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를 다시 구성·운영하기 위해 당초 2023년 중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 간 협의과정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무총리훈령 제정 및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국무총리비서실은 2024년 7월 초 기준으로 「(가칭)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안을 내부 검토 중인 단계로, 위원 위촉은 국무총리훈령 제정 후 ‘위촉계획 수립 → 후보자 추천(각 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등) → 국무총리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이러한 절차에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사회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 불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실제로 1기~4기 시민사회위원회는 각각 위원회 구성까지 2개월~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2024년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은 5월 말 기준 예산현액 1억 4,300만원 중 2,3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16.1%)되었음.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3년 및 2024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2023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5월말)
회의 수당 및 자문사례금	일반수용비(210-01)	70	15	55	70	3
소모품 구입 및 자료 인쇄 등	일반수용비(210-01)	12	23	△11	12	7
시민위 관련 회의 개최	임차료(210-07)	7	6	1	7	1
시민위 관련 업무협의	업무추진비(240-01)	25	11	14	25	4
시민사회 소통활동	국내여비(220-01)	29	29		29	8
계		143	84	59	143	23

(자료: 국무조정실)

□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해 편성된 사업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있음.

○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2023년도 집행액은 대부분 새로운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 소통활동 및 시민사회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시민사회비서관실의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음.

- 그러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경청간담회, 노동개혁 관련 MZ세대 경청간담회, 교권 정상화 등 의견수렴 관련 교육개혁 경청간담회, 소셜플랫폼 종사자 경청간담회 등 시민사회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간담회 개최에 예산액 중 상당액이 집행된 점, 시민사회 등과의 간담회·업무협의, 소통협의체 운영 등을 위해서는 다른 내역사업인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

수렴” 예산액이 매년 편성¹¹⁸⁾되고 있다는 점 및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일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무국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무총리비서실은 기존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 사유를 고려하여 신규 설치의 타당성을 재점검하는 한편, 향후 법령상 설치근거가 없고 미구성된 위원회의 운영경비 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 민정실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의 적정성 검토 필요

민정실 직원이 예산안 편성지침 상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조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특정업무경비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무총리비서실은 민정실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대국민 및 시민사회 소통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및 정무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250-03목)를 편성한 것으로, 개인별로 월정액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 1억 8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118) 내역사업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예산액: (‘22년) 2억 5,700만원, (‘23년) 2억 5,700만원, (‘24년) 3억 4,700만원

〈2023년도 특정업무경비 산출근거〉

(단위: 명, 천원)

구분		실장	비서관	과장급	4.5급이하	계
민정실	인원 수	1	2	6	32	41
	지급단가	300	240	220	190	130
정무실	인원 수	1	2	5	1	9
	지급단가	300	150	100	100	190

(자료: 국무조정실)

〈2023년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명)

구분	집행방식	2023년 예산 및 결산					
		지급단가	인원	예산액		집행액	
민정실	현금지급(정액)	190	41	108,000	93,600	108,000	93,600
정무실		130	9		14,400		14,400

(자료: 국무조정실)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250-03)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예산 편성 및 지급이 금지됨.

○ 특정업무경비의 편성·집행 대상인 ‘특정업무’의 범위에 대해 관련 지침은 “수사·감사·예산·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활동비(230-00)와 함께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현금성 경비라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 관련 지침〉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26

- 적용대상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 세부지침 :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예산 편성 금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p.183~185

- 적용범위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 세부지침 :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그런데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및 정무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는 국정현안 관련 조사·청문 및 시민사회 소통 활동을 사유로 편성된 것으로, 민정실 직원이 조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특정업무경비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무총리비서실은 특정업무경비 사용 용도에 대해 국회·정당 및 일반 국민·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정현안 및 민생 관련 현장의 목소리 청문, 정책설명, 의견수렴, 정보 파악 등 업무 수행에 사용 중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특히 민정실의 경우, 민정실의 주요업무 중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업무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업무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실 직원 현원 42명 중 41명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민정실 주요 업무〉

민정민원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 국내 주요 정보 및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 ○ 치안·재난 등 관련 주요 사건사고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보 및 상황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 직능·종교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관련 기타 사항

(자료: 국무조정실)

○ 또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업무추진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정업무경비로 계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비서실은 민정실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결산심사 시 법무부, 국방부 등에 대하여 수사·감사·조사·예산 등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요구가 의결된 바 있음.

<특정업무경비 편성 · 집행 대상 관련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대상연도	대상부처	지적요지	시정요구사항
2019결산	법무부	○ 법무부는 2019년도에 12개 공증사무대행청에 매월 94,000원씩 총 1,128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였으나, <u>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조사·예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한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대행청 직원은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u>	○ 법무부는 공증사무대행청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 (시정)
2020결산	국방부	○ 군법무관 중 법무참모(법무실장·법제과장)는 직제상 각군의 법률서비스 충족을 위해 법무실에서 법무 업무를 총괄하며 지휘부의 법률보좌역할을 수행하는바, 군 사법제도에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군검사와 구분되므로, <u>수사업무에 상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법무참모가 특정업무경비에 해당하는 수사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음</u>	○ 국방부는 수사 관련 업무를 직접적·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검찰수사활동비의 지급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지 않았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제도개선)

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1. 공통: 제도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필요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¹¹⁹⁾은 연구개발적립금을 제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함으로써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발생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24.2.29. 개정 전)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은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또는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부족한 퇴직급여충당금에 우선 적립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연구개발·교육훈련·기관발전 및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¹²⁰⁾¹²¹⁾

119) 세부사업: 국토연구원(1533-301), 에너지경제연구원(1536-3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1537-301),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

120)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제4조(적립금의 사용)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자체연구개발사업
2. (삭제)
3. 교육훈련사업
4. 기관발전사업(경직성 경상비 성격 사업 제외)
5.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

② ~ ③ (생략)

④ 사용계획 수립 시에는 제1항제1호의 자체연구개발사업 비중을 당해 연도 적립금 총 사용금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121) 2024.2.29. 개정전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구분

〈결산잉여금의 집행 구조〉

퇴직충당금	연구개발적립금		능률성과금
	자체연구개발	교육훈련·기관발전·기타	
부족분 우선 사용	결산잉여금의 50% 이상		결산잉여금의 50% 이내
	연구개발적립금의 60% 이상	연구개발적립금의 40% 이내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다음의 9개 기관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체 청사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

(단위: 천원)

기관	연도	납부액			예산액		
		합계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출연금	자체수입	연구개발 적립금
국토 연구원	'19	57,910	57,910	-	30,000	27,910	-
	'20	58,130	58,130	-	30,000	28,130	-
	'21	82,484	82,484	-	43,000	39,484	-
	'22	94,957	94,957	-	48,000	-	46,957
	'23	86,820	86,820	-	48,000	-	38,820
에너지 경제 연구원	'19	57,403	57,403	-	19,000	38,403	-
	'20	110,999	91,932	19,067	25,000	85,999	-
	'21	331,160	108,546	222,614	62,000	241,553	27,607
	'22	408,320	133,066	275,254	314,000	80,672	13,648
	'23	586,896	115,497	471,399	318,000	47,233	221,663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19	72,393	72,393	-	-	72,393	-
	'20	60,541	60,541	-	-	60,541	-
	'21	61,048	61,048	-	-	61,048	-
	'22	78,280	77,904	375	-	78,280	-

기관	연도	납부액			예산액		
		합계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출연금	자체수입	연구개발 적립금
	'23	82,002	82,002	-	-	63,233	18,769
한국 개발 연구원	'19	140,763	122,661	18,102	106,000	34,763	-
	'20	223,785	175,483	48,302	106,000	117,785	-
	'21	274,546	202,708	71,838	138,000	136,546	-
	'22	361,992	251,593	110,399	138,000	-	223,992
	'23	334,609	233,900	100,709	138,000	-	196,609
한국 교육 개발원	'19	581,386	309,743	271,642	145,000	436,386	-
	'20	650,584	351,503	299,081	145,000	344,584	161,000
	'21	764,138	394,926	369,212	153,000	451,138	160,000
	'22	864,648	435,325	429,323	560,000	216,148	88,500
	'23	679,479	355,814	323,665	560,000	119,479	-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19	6,146	6,146	-	-	6,146	-
	'20	38,541	38,541	-	-	38,541	-
	'21	55,961	55,961	-	-	55,961	-
	'22	68,221	68,221	-	-	68,221	-
	'23	72,275	72,275	-	6,000	45,275	21,000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19	126,109	126,109	-	60,000	66,109	-
	'20	190,907	138,073	52,834	118,000	72,907	-
	'21	451,936	166,826	30,000	134,000	317,936	-
	'22	1,321,815	275,134	1,046,681	188,000	638,124	495,691
	'23	1,195,640	266,762	928,878	405,000	790,640	-
한국 법제 연구원	'19	22,442	22,442	-	10,000	12,442	-
	'20	22,972	22,972	-	10,000	12,972	-
	'21	24,767	24,767	-	10,000	14,767	-
	'22	38,876	38,876	-	16,000	22,876	-
	'23	35,555	35,555	-	16,000	19,555	-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19	54,981	54,981	-	-	54,981	-
	'20	64,202	64,202	-	-	64,202	-
	'21	69,516	69,516	-	42,000	27,516	-
	'22	106,565	94,509	12,056	51,000	55,565	-
	'23	107,391	97,079	10,312	70,000	37,391	-

(자료: 각 연구기관 제출자료 취합)

○ 그런데 이들 기관이 납부하고 있는 제세공과금의 재원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9개 연구기관 중 5개의 기관¹²²⁾이 정부출연금 및 자체 수입 외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해 집행하고 있음.

특히,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과거 자체수입으로 집행한 부분 전액을 연구개발적립금에서 집행하였음.

〈최근 5년간 경상운영비 출연금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경상비 총액	출연금 비중	출연금 비중	경상비 총액	출연금 비중	출연금 비중	경상비 총액	출연금 비중	출연금 비중	경상비 총액	출연금 비중	출연금 비중	경상비 총액	출연금 비중	출연금 비중
국토	1,408	1,052	74.7	1,432	1,076	75.1	1,598	1,122	70.2	1,598	1,058	66.2	1,550	1,025	66.1
에너지	1,384	445	32.2	1,545	549	35.5	1,610	602	37.4	1,832	824	45.0	1,777	814	45.8
정보	2,119	971	45.8	2,350	1,095	46.6	2,336	1,104	47.3	1,529	306	20.0	1,518	295	19.5
KDI	3,879	2,749	70.9	3,490	2,360	67.6	3,527	2,398	68.0	3,458	2,329	67.4	3,653	2,550	69.8
교육	2,733	649	23.7	3,081	944	30.6	3,281	920	28.0	3,586	1,291	36.0	3,514	1,274	36.3
평가원	3,383	2,182	64.5	2,891	1,543	53.4	2,886	1,538	53.3	2,781	1,433	51.5	2,738	1,390	50.8
농촌	1,126	690	61.3	1,405	925	65.8	1,495	933	62.4	1,726	947	54.9	1,912	1,145	59.9

주: 12월 이사회 승인 기준

(자료: 각 연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제세공과금은 청사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매년 부과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122)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구분	내용
자체연구개발사업	○ 연구기관 설비목적에 부합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연구기획 및 정책연구, KDI대학원 교육사업 포함) ○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 연구지원성격 사업 ○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고도화(지식정보시스템, 행정(인사·채용, 전자증빙시스템 등)) ○ 연구몰입도 제고를 위한 연구(업무)환경 개선(단, 연례적 추진 경상비적 성격 제외)
교육훈련사업	○ 연구기관 소속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등 사업
기관발전사업	○ 기타 연구기관장이 기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 경제인문사회계 청년인턴사업 수행 ○ 지방이전경비 ■ 건물 원상복구비용 ■ 장기차입금 상환 ■ 출퇴근 버스 구입 및 운영경비 ■ 종전부동산 매각 감정평가비 ■ 연구·행정공간, 시설·장비 등 이전 ■ 연면적 증가 등에 따른 아웃소싱 경비, 공공요금 및 자산관리유지비 등 증가 비용 ■ 지방이전 이사비용 부족분 ■ 기관장 관사 구입, 직원사택 임차 ○ 기관발전을 위한 조직진단 컨설팅 등

○ 즉, 연구개발적립금의 설치 목적은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사업 등을 통한 연구개발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본래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¹²³⁾ 이를 경상비적 성격인 제세공과금 납부 재원으로 활용

123) 「연구기관 회계처리 및 결산지침」 제21조(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8. 연구개발적립금

한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적립금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국토연구원 등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한 경상비적 성격의 재산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의 납부를 지양하고, 연구개발적립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적정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적립금은 연구기관이 향후 연구기관의 자체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 연구재투자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적립금으로 하며, 기중 변동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2. 공통: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물품 및 용역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¹²⁴⁾

124)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물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업 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2) 검토의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1%를 준수하지 못하였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이 중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단위: 천원, %)

기관	총 구매액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구매비율	준수여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42,204	12,564	1.2	준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07,736	35,330	3.5	준수
국토연구원	4,230,262	55,522	1.3	준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74,249	25,185	2.1	준수
산업연구원	2,855,366	45,080	1.6	준수
에너지경제연구원	2,599,033	240,041	9.2	준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538,859	59,328	2.3	준수
통일연구원	319,000	32,455	10.2	준수
한국개발연구원	3,708,536	230,324	6.2	준수
KDI국제정책대학원	3,769,345	64,645	1.7	준수
한국교육개발원	29,283,949	575,435	2.0	준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6,388,129	368,492	1.0	준수
한국교통연구원	19,105,832	48,554	0.3	미준수
한국노동연구원	570,941	18,053	3.2	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182,936	102,034	1.0	준수
한국법제연구원	3,517,283	67,192	1.9	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345,559	176,114	4.1	준수

기관	총 구매액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구매비율	준수여부
육아정책연구소	719,780	11,891	1.7	준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80,238	130,702	7.8	준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494,456	112,579	2.0	준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0,633,491	312,497	2.9	준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002,958	35,570	0.6	미준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342,396	11,933	0.2	미준수
한국행정연구원	3,854,711	40,677	1.1	준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362,569	39,833	1.7	준수
한국환경연구원	1,897,052	112,964	6.0	준수
건축공간연구원	251,237	13,227	5.3	준수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은 5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2023년도 의무구매 비율은 0.25%에 불과함.

〈한국교통연구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구매비율	준수여부
2019년	16,950	33	0.20	미준수
2020년	16,625	42	0.25	미준수
2021년	19,216	82	0.43	미준수
2022년	29,779	45	0.15	미준수
2023년	19,106	49	0.25	미준수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공통: 논문게재료 관리 강화 및 관련 지침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연구결과의 성과확산을 위하여 연구정보활동비를 통해 기관 연구원 연구 성과물의 학술지 게재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연구정보활동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상 해당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연수, 정보수집 또는 활동경비로서 국내·외 교육훈련, 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및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도서 등 문헌, 학술정보 DB 사용료 등 자료 구입 및 특근 직원에 대한 식비로 지출하도록 편성된 예산 비목임.

2) 검토의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논문게재료와 관련한 공통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논문게재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의 학술지 게재 비용 지원은 통상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작성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료, 심사료, 번역·교정료 등(이하 “논문게재료”)을 신청에 따라 연구원 또는 대상 학술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논문게재료 지급 현황〉

(단위: 만원)

기관명	1인당 최고 지급액	편당 최고 지급액	2023년도 총 지급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7	63	419
국토연구원	90	120	9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산업연구원	50	50	207
에너지경제연구원	38	38	1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0	50	117
통일연구원	150	150	1,470
한국개발연구원	-	-	-
KDI국제정책대학원	389	389	1,491
한국교육개발원	40	40	1,45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0	100	2,751
한국교통연구원	384	500	3,053
한국노동연구원	30	30	2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7	47	317
한국법제연구원	20	20	16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0	420	731
육아정책연구소	40	40	6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0	40	14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70	70	1,33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1	71	5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76	374	2,933
한국행정연구원	30	30	17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0	100	1,411
한국환경연구원	357	537	5,877
건축공간연구원	200	200	1,10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별 논문게재료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각 출연연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논문게재료 지급지침 또는 세부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금액의 상한 역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은 논문게재료 지급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급금액의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논문게재료의 지급방식 및 지급액에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며,
- 통상 논문게재료 지급이 게재료, 심사료 또는 번역료의 실비 지원인 것과 달리 우수연구논문 장려금, 인센티브, 기여지원금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논문게재료에 관한 규정 현황〉

기관명	지급기준	상한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없음	없음
국토연구원	지침	연간 300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산업연구원	기준	편당 50만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침	편당 200만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준	편당 50만원
통일연구원	지침	편당 10만원
한국개발연구원	-	-
KDI국제정책대학원	기준	연간 600만원
한국교육개발원	지침	편당 45만원

기관명	지급기준	상한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침	편당 100만원
한국교통연구원	없음	없음
한국노동연구원	지침	편당 30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업무보고	없음
한국법제연구원	지침	편당 30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준	없음
육아정책연구소	없음	없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없음	없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침	없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침	편당 1,0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침	없음
한국행정연구원	지침	편당 50만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침	편당 200만원
한국환경연구원	없음	없음
건축공간연구원	계획	편당 200만원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재구성)

□ 지침 등 지급기준 없이 논문게재료를 지급할 경우 기관별 자의적 집행의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긴 연구기관 간 지급상한의 편차는 유사한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논문게재료와 관련한 공통 규정 마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논문게재료가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출연연구기관은 논문게재료 지급대상 학술지 기준, 지급방식 등을 정하여 논문게재료 지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¹²⁵⁾: 공동채용 확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12억 4,100만원 중 365억 4,300만원이 출연되고, 36억 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억 9,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7,366	37,366	3,875	-	-	41,241	36,543	3,601	1,097	18,77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규직원 채용을 공동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채용 사업은 행정비용 절감, 채용정보 접근가능성 제고, 우수인재 유치 효과가 기대되므로 참여기관과 채용인원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연구회의 일반사업인 ‘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 효율화 추진’은 채용,

125) 세부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법무자문, 법정의무교육 등의 공동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목적의 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2억 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 600만원 중 7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효율화 추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700	700	206	-	-	906	779	127	-	36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당해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출연연 공동채용 위탁운영’은 개별 연구기관별로 실시하던 신규직원 채용을 공동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채용플랫폼 공동 운영 및 공동채용 대금의 명목으로 총 3억 2,535만원이 집행되었음.

〈출연연 공동채용 관련 집행내역〉

(단위: 만원)

주요내용	비목	집행액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채용플랫폼 공동 운영 계약 체결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19,700
2023년도 출연연 공동채용(통합필기·면접) 대행 관련 제1차 공동채용 대금		6,057
2023년도 출연연 공동채용(통합필기·면접) 대행 관련 제2차 공동채용 대금		2,232
2023년 출연연 공동채용(통합필기·면접) 대행 (제3차 공동채용) 대금		4,546
합 계		32,535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공동채용 사업의 성과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의 수와 채용인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2022년도에는 총 27개¹²⁶⁾ 연구기관 중 18개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여 총 127명을 채용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6개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여 총 68명을 채용하여 공동채용 사업의 확산과 성과 창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공동채용사업 성과〉

구분	참여기관 수	채용인원
2021년	6개	19명
2022년	18개	127명
2023년	16개	68명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또한 공동채용 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기관은 기관별 채용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채용한 총 1,317명 중 68명(5.2%)만이 공동채용을 통해 채용되었다는 점¹²⁷⁾에서 당해 사업의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26) 24개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127) 2022년도에는 총 1,539명의 채용인원 중 127명(8.3%)을, 2021년도에는 총 1,459명의 채용인원 중 19명(1.3%)을 공동채용으로 채용하였음.

〈기관별 채용 현황(2023년)〉

(단위: 명)

구분	공동채용 ¹⁾					자체채용 ²⁾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청년인턴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청년인턴	
합계	68	12	4	19	33	1,249	214	69	742	2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2	-	-	-	10	-	-	8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	-	3	-	41	19	-	15	7
국토연구원	-	-	-	-	-	66	7	2	49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	-	29	13	-	11	5
산업연구원	2	-	-	-	2	33	7	-	12	14
에너지경제연구원	-	-	-	-	-	36	6	4	22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	-	40	7	2	19	12
통일연구원	6	3	-	1	2	7	3	-	4	-
한국개발연구원	5	-	-	5	-	105	36	11	43	15
KDI국제정책대학원	1	-	-	-	1	57	5	15	23	14
한국교육개발원	-	-	-	-	-	60	8	3	33	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	132	11	9	102	10
한국교통연구원	4	3	1	-	-	63	-	1	47	15
한국노동연구원	-	-	-	-	-	28	11	-	11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	69	10	3	41	15
한국법제연구원	1	-	-	1	-	31	8	3	6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	-	3	2	48	3	4	37	4
육아정책연구소	6	-	-	4	2	11	-	1	9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	-	-	-	11	13	2	-	9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	-	-	1	70	29	3	38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3	2	1	-	10	24	4	2	13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1	-	2	-	39	2	-	27	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	-	-	2	23	5	2	16	-
한국행정연구원	-	-	-	-	-	46	5	2	29	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	-	37	3	-	18	16
한국환경연구원	3	1	2	-	-	87	9	1	59	18
건축공간연구원	-	-	-	-	-	44	1	1	41	1

주1) 공동채용인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채용을 통해 채용한 인원

주2) 자체채용인원 : 공동채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채용한 인원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공동채용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에 더해 구직자에게는 대규모의 정기·동시 채용에 따른 채용정보에의 접근 가능성 확대 및 예측가능성 확대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각 연구기관의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공동채용 사업의 확산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¹²⁸⁾: 재정정보시스템 확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12억 4,100만원 중 365억 4,300만원이 출연되고, 36억 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억 9,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2회계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7,366	37,366	3,875	-	-	41,241	36,543	3,601	1,097	18,77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사업은 10여년간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시스템 보급·활용에 미흡함이 있으므로 사업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128) 세부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 연구회의 일반사업인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예·결산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템 이용기관의 관련 업무 적시 수행을 위한 효율적·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억 6,800만원 중 23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464	2,464	4	-	-	2,468	2,343	125	-	1,25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¹²⁹⁾ 등을 통한 출연연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표준화된 예산·결산 관리시스템 개발사업으로서 추진되었으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4억 2,4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24년 예산도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129) 감사원은 201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연구사업비에서 인건비성 급여 등 편법집행, 경상운영비 등 용도로 부당집행, 개인연금 지원 등 용도로 부당집행, 결산잉여금 처분 부적정,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의 사항을 지적하였음.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구분	예산 (백만원)	주요 성과	
		배포 성과	주요 기능 개선 성과
2014년	7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예산, 회계, 인사, 복무 시스템 시범 구축
2015년	300	-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예산·회계·인사·복무 기능 개선
2016년	600	육아정책연구소	전자결재시스템, 법인카드 모니터링, 연구개발적립금 관리, 계정 원장 조회
2017년	2,400	통일연구원	급여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2018년	2,400	-	망분리 연구기관 망연계솔루션 도입 및 연계
2019년	2,4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자증빙 시스템 구축, 통계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연계, 신규 참여기관 업무시스템 컨설팅
2020년	2,212	-	경영자정보시스템(EIS) 개발, 지출결의·전자증빙 기능 개선
2021년	1,974	-	재정업무포털 구축, 이슈추적시스템(ITS) 개발
2022년	1,974	건축공간연구원	사업별/사용자별 예산 사용 제어 기능 구축, 법인카드 오·남용 반납처리 등 법인카드 관리기능 개선
2023년	2,46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자산관리, 계약관리 등 구축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당해 사업의 성과를 살피면, 10여년간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개 연구기관 중 8개 기관만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1개 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만 당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한편, 연구회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각 연구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을 당초 수립하였으나, 시스템 활용 편의성 부족, 연구기관 데이터에 대한 연구회의 모니터링 가능성에 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점검 TF’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희망기관에 한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을 배포하되 나머지 기관은 기관별로 사용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은 연구용역 등 계약관리, 대외활동 등 복무관리, 재물조사 등 자산관리 등에 활용되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인 확산·활용이 필요함.

○ 감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적립금 관리 부적정(2015년)¹³⁰⁾,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2019년)¹³¹⁾, 출

1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소관 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적립금을 경상경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함

131) 소속 연구기관이 아닌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를 개인 자격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나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76명(98건)이 소속기관 모르게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를 수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

연연구기관의 과도한 복지성 인사제도 운영(2023년)¹³²⁾,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관리 강화 필요(2023년)¹³³⁾ 등의 문제점들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표준운영절차 보급을 통해 근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NFIS) 제공 기능 현황(2023년말 기준)〉

구분	항목수	주요 기능
예산관리	55개	예산기준관리, 예산편성관리, 예산변경관리, 예산배정관리, 예산현황, 연구개발적립금 관리, 소요예산 추정관리, 수탁간접비 관리 등
회계관리	69개	예산집행관리, 결의서관리, 전표관리, 장부관리, 법인카드 관리, 세무관리, 예산실적현황, 자금관리, 결산관리, 부채관리, 회계기준관리, 수탁사업관리 등
계약관리	16개	연구용역, 일반계약, 단가계약관리, 구매계약관리, 검수관리, 원고검수확인서 관리, 계약현황 등
인사관리	38개	인사정보관리, 발령관리, 조직관리, 위원회관리, 평가관리, 인사기준관리 등
복무관리	39개	휴가관리, 유연근무관리, 출장관리, 추가근무관리, 대외활동관리, 근태현황관리, 교육관리, 외부겸직관리, 복무기준관리 등
급여관리	73개	급여기준관리, 기준정보관리, 4대보험, 급여관리, 급여세무관리, 급여현황, 퇴직금관리, 연말정산, 신청관리 등
사업관리	39개	현황관리, 사업발굴/공모/선정, 사업수행, 사업성과, 기본정보관리 등
자산관리	29개	고정자산관리, 자산변동관리, 재물조사, 자산결산관리, 자산코드관리 등

132) 소관 연구기관이 연구연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보고서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결과보고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연구연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환수하는 등 연구연가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을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

13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영개선 성과와 무관하게 수입목표액을 과소하게 설정하여 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 결산 실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예상금액을 수입목표액에 반영하는 등 기관의 실질적 경영개선 성과를 능률성과급 지급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구분	항목수	주요 기능
감사관리	23개	법인카드관리, 법인카드불출관리, 카드현황, 감사기준관리, 법인카드 모니터링 등
경영자 정보시스템	20개	예·결산 현황, 출연금 추이, 결산현황, 인사·급여·복무 현황, 경상운영비 집행 현황 등
업무포털	23개	공지사항, 자원관리, 자원예약, 조직도 관리, 설문조사, 동호회 관리 등
총계	424개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관리, 이슈추적시스템(ITS) 항목은 제외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투입 예산에 걸맞는 참여기관 확보, 출연연구기관 예·결산 투명성 제고 등 성과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한국개발연구원¹³⁴⁾: 수시연구사업비 사업·예산 관리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개발연구원” 사업은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정책교육 관련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692억 4,800만원 중 631억 3,500만원이 출연되고, 39억 7,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1억 3,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개발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개발연구원	66,770	66,770	2,478	-	-	69,248	63,135	3,976	2,137	68,54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국개발연구원은 2023년 수시연구사업비 예산현액 9,2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시의 사업계획을 준수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하였음.

134) 세부사업: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 부설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포함

□ ‘수시연구사업비’는 한국개발연구원 기본사업비 중 기관고유사업의 일종으로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을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임.¹³⁵⁾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2,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2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개발연구원 수시연구사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71	71	21	-	-	92	20	72	-	89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2023년 수시연구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험과 시사점 연구, 지역 혁신 클러스터 확충방안 연구, 산업단지 특성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 효과 연구 등 4개 연구과제가 실시¹³⁶⁾되었는데, 이는 2020년의 8개 과제, 2021년의 12개 과제, 2022년의 11개 과제에 비해 수시연구과제 수행 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135)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23

136)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는 2023년 11월 과제선정되었으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

〈수시연구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연구과제명
2020년	19,100	663	부동산조세, 주택시장 그리고 거시경제간의 상호관계 분석
		1,576	공천제도와 입법행위
		2,325	교육혁신과 인적역량에 관한 연구: 유치원을 중심으로
		2,150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과제
		200	온디맨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입점업체 매출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 배달앱 시장을 중심으로
		485	교통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299	경쟁적 병목 시장 플랫폼의 전략과 정부 정책
		1,239	코로나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 연구
		8,937	합 계
2021년	25,904	284	온디맨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입점업체 매출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 배달앱 시장을 중심으로
		476	교통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5,522	코로나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 연구
		269	공공갈등·공론화·시민참여 국민인식조사 분석
		987	북한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214	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160	서울시 정비사업의 가격효과 : 재건축 프리미엄 추정을 중심으로
		237	경제특구 효과성 분석과 시사점
		369	개인사업자의 신용위험 분석 : 비용구조와 비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30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연구
		3,908	ESG 평가의 실효성 연구
		22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12,478	합 계

구분	예산액	집행액	연구과제명
2022년	20,460	234	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337	서울시 정비사업의 가격효과 : 재건축 프리미엄 추정을 중심으로
		239	경제특구 효과성 분석과 시사점
		721	개인사업자 대상 경영교육·컨설팅 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시사점
		717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연구
		1,752	ESG 평가의 실효성 연구
		1,164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4,215	미래전략연구: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969	디지털 지급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1,274	대학 취업성과에 관한 연구
		3,934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험과 시사점 연구
		15,556	합 계
2023년	7,100	973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25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험과 시사점 연구
		839	지역 혁신 클러스터 확충방안 연구
		131	산업단지 특성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연구
		0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
		1,968	합 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수시연구사업비의 최근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예산액-집행액)를 살펴
피더라도, 2020년은 1억 163만원(예산액 대비 53%), 2021년은 1억
3,425만원(52%), 2022년은 4,904만원(24%), 2023년은 5,132만원(72%)
으로 수시연구사업을 위한 예산의 상당부분(2020년~2023년 평균
46%)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시연구의 적정한 사업·예산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전연구 사업비 집행잔액(이월금)은 당해연도 동일 항목의 사업¹³⁷⁾(기본연구 → 기본연구 / 연구지원 → 연구지원 / 일반사업 → 일반사업)에 편성함을 원칙¹³⁸⁾으로 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시연구사업비의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이월금)를 차년도 기본연구사업에 편성하고 있어 지침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¹³⁹⁾,
- 수시연구사업비에 편성된 예산의 상당부분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예산편성시의 사업계획을 준수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137)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 구조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23)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절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138) 직전연도 사업비 집행잔액(이월금)은 당해연도 동일항목의 사업(기본연구 → 기본연구 / 연구지원 → 연구지원 / 일반사업 → 일반사업)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기타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25)

139) 수시연구사업은 기본연구사업의 일종에 해당함.

□ 한편, 2023년도에 수시연구사업의 과제시작일과 종료일을 살펴보면 2023년도 연내에 과제가 시작되어 종료된 연구과제는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3건의 연구과제는 2개의 회계연도에 걸쳐 사업이 수행되어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함.

〈2023회계연도 수시연구사업 과제기간〉

연구과제명	과제시작일	과제종료일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2022. 9. 1.	2023. 2. 28.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험과 시사점 연구	2022. 11. 16.	2023. 5. 15.
지역 혁신 클러스터 확충방안 연구	2023. 7. 1.	2023. 12. 31.
산업단지 특성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연구	2023. 9. 15.	2024. 2. 29.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	2023. 11. 1.	2024. 1. 31.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또한, 대학 구조개혁·경제개발 5개년 계획·지역 혁신 클러스터·외국인 직접투자·개인연금에 관한 연구는 교육·거시경제·산업·금융 정책의 수립과 그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적 연구과제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시연구사업보다는 기관의 설립목적¹⁴⁰⁾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140) 「한국개발연구원 정관」 제2조(목적) 한국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국내외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구원의 정관상의 목표, 기관의 특성 정책 및 환경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시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연구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수시연구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¹⁴¹⁾: 기본연구사업 외부용역비 집행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01억 2,500만원 중 350억 7,300만원이 출연되고, 27억 7,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2억 7,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7,982	37,982	2,143	-	-	40,125	35,073	2,774	2,279	37,818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기관의 고유 연구사업인 기본연구사업은 연구책임성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내부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함이 바람직하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개 기본연구과제를 외부용역의 형식으로 수행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141) 세부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1548-301)

- ‘기본연구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사업비¹⁴²⁾ 중 기본연구사업비로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3억 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억 7,600만원 중 13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연구사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469	1,469	307	-	-	1,776	1,313	463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으로 20개 연구과제 및 수시연구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중 3개 연구과제의 외부용역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외부용역비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과제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지급하는 용역비로 정의되며, 외부기관에 위탁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일반적인 원고 위탁 및 외부용역 등은 지양하도록 하고, 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대규모 설문조사, 행사 대행과 외부용역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용역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정하고 있음.

○ 위 지침을 기준으로 기본연구사업의 외부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점

142) 기본사업비는 기본연구사업비와 연구지원사업비로 구분됨.

검하면, 노무제공자 경비 설문조사(990만원)¹⁴³⁾,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관련 그룹인터뷰(990만원)¹⁴⁴⁾ 등과 같이 연구에 필요한 기본 자료 수집을 위한 외부용역비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연구과제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고용 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경우 특정 학회에 연구과제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당해 연구과제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¹⁴⁵⁾에서 관련 외부용역비 집행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기본연구사업 외부용역비 집행 부적정〉

연구과제명	용역 최종보고서 제목	용역 상대방	외부용역비 집행액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부가가치세 장기세원분포 분석	한국 재정학회	1,200만원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구조모형을 통한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한국 재정학회	1,0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 재정학회	1,000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3) 연구과제명: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144) 연구과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145)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연구과제 연구보고서의 내용 및 참고문헌의 유사성 또는 동일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생각됨.

□ 당해 연구과제들이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연구사업인 기본연구사업의 연구과제인 동시에 1년 이내로 수행되는 단기과제인 점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원 내부의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외부용역을 통한 연구과제 수행은 연구사업 중 직접 수행이 매우 곤란한 과제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조세재정연구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경우 당초 연구책임자의 이직에 따라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외부용역계약을 통해 당초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설명이나,

○ 기본연구과제는 연구원의 고유 직무로서 연구책임자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담당한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연구원이 연구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직한 연구책임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행태가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단기의 기본연구사업은 연구의 책임성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수행하고, 외부용역비 집행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¹⁴⁶⁾: 기본연구사업 임차료 등 과다집행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01억 2,500만원 중 350억 7,300만원이 출연되고, 27억 7,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2억 7,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7,982	37,982	2,143	-	-	40,125	35,073	2,774	2,279	37,81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의 중간보고심의회를 원격지인 서울에서 개최하여 임차료, 국내여비, 수용비, 회의비 등 예산을 불필요하게 과다 집행하였음.

146) 세부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1548-301)

□ ‘기본연구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사업비¹⁴⁷⁾ 중 기본연구사업비로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3억 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억 7,600만원 중 13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연구사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469	1,469	307	-	-	1,776	1,313	463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으로 20개 연구과제 및 수시연구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중 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18개 연구과제¹⁴⁸⁾의 중간보고심의회¹⁴⁹⁾ 개최 관련 예산집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147) 기본사업비는 기본연구사업비와 연구지원사업비로 구분됨.

148)

18개 연구과제명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코로나19가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전망 및 정책 시사점	이민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사업과 지역발전: 자본지출과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	지역노동수요충격이 지역경제 및 재정에 끼친 영향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을 활용한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체계 변화의 효과 분석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연구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방안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149) 연구사업의 수행관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규정은 연구과제의 계획 및 세부추진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착수보고심의회, 연구진도 및 방향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중간보고심의회,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최종보고심의회를 예정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개 연구과제의 중간보고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센터(코엑스)에서 동시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 임차료 1,593만원 및 우등버스 임차료 176만원을 집행하였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임차료에 대하여 회의실 임차는 정부·공공기관 보유 시설을 최대한 우선 활용하고, 호화로운 호텔 임차 등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임차료 집행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사업 수행관리 관련 예산집행 내역〉

구분		착수보고심의회	중간보고심의회	최종보고심의회
위원 수		외부 48명 내부 36명	외부 46명 내부 36명	외부 55명 내부 41명
집행 예산 ¹⁵⁰⁾	전문가활용비	720만원	835만원	2,117만원
	임차료	250만원 ¹⁵¹⁾	1,769만원	-
	외부용역비	38만원	-	-
	국내여비	-	716만원	46만원
	수용비	4만원	117만원	7만원
	회의비	613만원	1,015만원	787만원

150) 예산적요 ‘2023년도기본연구과제착수보고심의회개최비’, ‘2023년도기본연구과제중간보고심의회개최비’, ‘2023년도기본연구과제최종보고심의회개최비’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51) 예산적요: 2023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심의회용 태블릿 단말기 단기 임차료 지급

-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중간보고심의회의 원격지(서울) 개최에 따라 연구원 직원 출장 등에 따른 국내여비 716만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수용비 117만원, 회의비 1,015만원 등도 집행하였는데,
 - 경내에서 개최된 착수보고심의회의 경우 수용비 4만원, 회의비 613만원이 집행되었고, 최종보고심의회의 경우 국내여비 46만원, 수용비 7만원, 회의비 787만원이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사업 수행관리를 위한 각종 심의회 개최시 정부·공공기관 보유 시설을 최대한 우선 활용하여 과도한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9. 통일연구원¹⁵²⁾: 연구기획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통일연구원”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통일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39억 1,100만원 중 109억 6,100만원이 출연되고, 26억 3,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1,4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통일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일연구원	10,298	10,298	3,613	-	-	13,911	10,961	2,636	314	10,92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통일연구원은 연구기획사업비 중 수용비, 전문가활용비를 기관의 기초적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적 성격의 사안에 집행하여 사업별 예산구분을 저해하였음.

152) 세부사업: 통일연구원(1538-301)

□ ‘연구기획사업’은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연구지원사업’의 일종으로, 통일연구원은 통일·북한·평화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및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연구사업 기획, 연구사업 관리체계 강화, 성과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기획사업’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2,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 9,700만원 중 1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통일연구원 연구기획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74	174	23	-	-	197	182	15	-

(자료: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의 연구기획사업비의 비중이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음.

○ 연구기획사업은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기획·관리하는 사업으로 연구기획사업의 성과는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됨. 따라서 그 예산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인 기본연구사업의 규모와 연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 202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통일연구원의 연구기획사업비는 1억 7,400만원으로, 6억 4,000만원인 기본연구사업비의 27.19%의 규모이

며, 13억 5,900만원인 기관고유사업비(=기본연구사업비+연구지원사업비)의 12.80%의 규모임. 이를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하면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연구기획사업비 비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의 24개 연구기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관고유사업비 대비 연구기획사업비 비율은 가장 높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획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구기획 사업비(A)	기본연구 사업비(B)	기관고유 사업비(C)	A/B*100	A/C*1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5	0	3,168	-	8.36%
한국개발연구원	30	692	4,919	4.34%	0.6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2	1,469	2,483	4.22%	2.5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1	1,415	5,074	10.67%	2.98%
통일연구원	174	640	1,359	27.19%	12.80%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95	736	1,039	12.91%	9.14%
한국행정연구원	197	962	1,796	20.48%	10.9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9	2,385	2,852	1.64%	1.37%
산업연구원	78	2,006	3,551	3.89%	2.20%
에너지경제연구원	120	1,044	2,004	11.49%	5.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4	288	984	39.58%	11.5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4	1,222	2,357	12.60%	6.53%
한국노동연구원	3	919	2,365	0.33%	0.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1	1,569	2,967	8.99%	4.7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	803	1,299	4.98%	3.08%
한국법제연구원	206	901	2,362	22.86%	8.7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5	820	1,736	12.80%	6.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4	686	995	9.33%	6.43%
한국교통연구원	66	487	752	13.55%	8.78%
한국환경연구원	113	1,621	2,189	6.97%	5.16%
한국교육개발원	103	1,659	2,235	6.21%	4.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2	1,476	3,106	6.23%	2.96%

국토연구원	182	1,241	2,210	14.67%	8.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1	1,055	2,202	16.21%	7.77%
건축공간연구원	35	658	1,100	5.32%	3.18%
평균(경인사제외)	106	1,115	2,247	9.48%	4.70%

(각 연구기관 결산 설명자료(Ⅲ-3)를 토대로 작성)

□ 한편, 통일연구원의 연구기획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비목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연구기관 운영에 있어 기초적 토대가 되는 성격의 활동에 편성·집행되는 경상운영비로 집행되어야 할 사안을 연구기획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 첫째, 연구기획사업비 내 수용비 집행 중 ‘물품구입비 지급’ 명목으로 집행을 273만원은 마트, 카페, 식당 등이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연구 또는 행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료·음료비 등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회의비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연구기획사업비 내 전문가활용비 550만원을 ‘연구위원 스냅사진 촬영비 지급’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기관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대금은 연구기획 또는 연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관의 일반적인 활동에 해당하므로 경상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함.

○ 셋째, 연구기획사업비 내 전문가활용비 110만원을 ‘2023년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명목으로 외부위원에게 지급(사례금)한 사실이 있는데, 통일연구원의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따르면 인권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치되는

것¹⁵³⁾으로 기관 일반 운영과 관련되므로 경상운영비에서 사례금을 집행하여야 함. 참고로, 통일연구원은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한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사례비 60만원은 경상운영비에서 집행하였음.

- 넷째, 연구기획사업비 내 수용비 집행 중 명함제작(42만원), 연하장 제작(55만원), 자료(신문¹⁵⁴⁾)구독료 지급(56만원) 등의 경우도 연구기획사업비가 아닌 경상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사업구분상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통일연구원은 연구기획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기획사업의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예산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153) 제22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4.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154)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¹⁵⁵⁾: 경상경비 집행 효율성 검토 필요(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업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고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31억 4,100만원 중 125억 2,200만원이 출연되고, 3억 1,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12,814	12,814	327	-	-	13,141	12,522	319	300	13,37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ESG 경영 확대를 위해 iPad 79대를 7,167만원에 구매하였으나 인력규모·지급방식 등을 고려할 때 자산구매에 과도함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155) 세부사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553-301)

□ ‘연구기관 인센티브’는 연구기관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매년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경상경비 인센티브를 배정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고유사업으로 202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총 11개 연구기관에 대하여 8억 8,199만원을 배부(집행)하였음.

〈2023년 연구기관 인센티브 지급내역〉

(단위: 천원)

기관명	평가등급	기준액	최종 산출금액 ¹⁾
국토연구원	A	100,000	107,45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	50,000	57,454
한국교통연구원	A	100,000	107,4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	50,000	57,454
한국법제연구원	B	50,000	57,4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	50,000	57,4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	100,000	107,45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B	50,000	57,45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B	50,000	57,454
한국환경연구원	A	100,000	107,454
건축공간연구원	A	100,000	107,454
합계		800,000	881,994

주1) 평가등급별 기준금액에 따라 배분 후 잔액은 배정 기관의 수로 균등 배분(기관별 7,454천원)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경상경비 인센티브로 5,745만원을 지급받아 2023년 11월 21일 ‘하이브리드 근무환경(태블릿PC) 구축 관련 물품 구매 소요수의 건적 제출 안내 공고’를 통해 총액 7,167만원¹⁵⁶⁾에 Apple社의 iPad Air(5세대) 79대를 구매하여 공급받았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156) 경상경비 인센티브 5,745만원에 경상운영비 1,422만원을 더하여 집행

은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연구기관별 인센티브는 경상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운영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되, 전직원 포상금 또는 성과급 등으로의 집행을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동 지침은 경상운영비는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야 하며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지급하여 사실상 급여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도록 정함.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해당 기기의 원외 반출이 불가하며, 실제 각종 회의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친환경 업무 수행환경을 조성(ESG 경영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 2024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103명이 근무하는 연구기관에서 79대의 iPad 구매는 기관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경상경비를 활용하여 구매한 iPad 79대를 모두 연구위원·행정원 등 직원 개인에게 지급(대여)하였다는 점, 친환경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량의 태블릿PC 등 정보기기를 구매하고 각 부서에 보급한 후 회의를 수행하는 개인(직원)이 대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해당함.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경상경비 및 경상경비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구입행위의 적정성 및 수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행정연구원¹⁵⁷⁾: 규제사후영향평가센터(세종연구실) 운영 내실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행정연구원” 사업은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50억 9,200만원 중 143억 6,900만원이 출연되고, 6억 5,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행정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 행정연구원	14,556	14,556	536	-	-	15,092	14,369	656	67	13,906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국행정연구원은 규제사후영향평가센터를 세종시에 개소하였으나, 관련 조직과 인력의 획득에 미흡함이 있으므로 「직제규정」 개정 및 내부인력 활용 등의 검토가 요구됨

157) 세부사업: 한국행정연구원(1552-301)

□ 한국행정연구원은 2023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에 규제사후영향평가센터(세종연구실)를 개소하였음. 세종연구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규제영향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정부부처의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정부 밀착형 규제연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되었음.¹⁵⁸⁾

○ 세종연구실 개소 및 운영 관련 2023년 집행된 예산은 총 1억 3,939만원(인건비 제외) 등으로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료 4,865만원, 사무실 시설관리 등 유지보수비 5,320만원을 포함함.

□ 사후규제영향평가는 대통령 소속의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추진에 의해 형성된 제도로,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중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분석하여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도입·추진을 발표하면서, 재검토 기한 도래 또는 쟁점 규제 중 심층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규제연구전문기관(KDI·행정연구원)에서 분석·검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 심사 시 그 분석·검증결과를 객관적 판단근거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힘.

○ 이에 대한 조치로 한국행정연구원은 2023년 1월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규제정책연구실 내 규제정책연구센터와 규제연구센터를 폐지하고, 사후영향평가팀과 비용분석평가팀을 신설하며, 2023년 9월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사후영향평가팀의 분장사항으로 ‘한국행정

158) 한국행정연구원 보도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세종연구실’ 설립하여 정부 밀착형 사후규제영향평가 연구 본격화」(2023.5.12)

연구원 세종연구실 사업관리 및 지원’을 명시하였음.

□ 다만 한국행정연구원은 세종연구실을 개소하면서 세종연구실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사후영향평가팀 소관의 연구실(연구 장소)로 활용하여, 사후영향평가팀 직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행정연구원 본원에서 근무하되, 2명씩 2개월마다 세종연구실에 순환하여 단기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후영향평가팀 팀원(석사급 연구원) 전원(6명)을 계약직(비정규직) 연구인력으로 충원하였는데 직원 채용공고¹⁵⁹⁾에 세종특별시 근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당해 인원들을 세종연구실에 상주하게 하지 못하고 단기의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사후영향평가팀 업무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우려가 큼.

□ 사후규제영향평가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탁월한 성과의 창출이 요구되며 한국행정연구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원과 별도의 사무실을 개소하였으나, 조직·인력의 획득 성과 및 운영행태는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시행을 위해 세종연구실을 포함한 사후영향평가팀 충원 및 운영에 있어 외부의

159)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도 제4차 직원 채용공고

단기 인력을 활용하기보다는 연구원 내부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직·정원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¹⁶⁰⁾: 계약관련 법령준수노력 미흡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63억 5,500만원 중 251억 3,300만원이 출연되고, 4억 8,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 3,6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809	25,809	546	-	-	26,355	25,133	486	736	25,327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워크숍 장소 및 체점본부 합숙 시설 임차를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사업의 시기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은 수의계약 사유로서 적정하지 아니함

160) 세부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공공기관에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¹⁶¹⁾하며, 동법 제12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공공기관의 공시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를 통해 경영공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공시 내용에는 수의계약체결 내역과 사유가 포함되어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시한 2023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평가원은 자체규정인 「회계규정시행규칙」 제217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사유로 총 6건, 총 5억 2,875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평가원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217조제1항제1호 가목은 경쟁에 부

161)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9. 정관·사채원부,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처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함.

〈회계규칙 제21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현황〉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금액(만원)
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컴퓨터 기반 평가 시행 운영 위탁 용역 연장	퓨처누리	5,280
②	학업성취도 컴퓨터 기반 평가시스템 구축사업(3차연도) 감리 용역	테크윈	2,400
③	수업연구회 컴퓨터 기반 자율평가 출제 역량 강화 연수(워크숍)	코리아나호텔	17,757
④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초등학교 5학년 및 중학교 2학년 성취수준 설정 워크숍	코리아나호텔	15,982
⑤	채점본부 격리 합숙 시설 임차(3월)	건설경영연수원	5,728
⑥	채점본부 격리 합숙 시설 임차(6월)	건설경영연수원	5,728
합 계			52,875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업성취도 컴퓨터 기반 평가 시행 운영 위탁 용역 연장(①) 및 감리 용역(②)의 경우 2023년 3월 2일 교육부의 「20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기본 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긴급하게 진행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의견임.

□ 이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워크숍 행사(③, ④), 합숙 시설 임차(⑤, ⑥)에 대하여는 감염병(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려움.¹⁶²⁾

○ 국가계약법령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수의계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사유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 편의를 위해 법령의 수의계약사유를 확대해석하여 수의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¹⁶³⁾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추정가격이 2천만원(경우에 따라 5

1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함.

163)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224조¹⁶⁴⁾는 관련규정이 미비한 등의 문제도 발견됨.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¹⁶⁵⁾는 예산규모가 25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며,

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하 생략)

164) 제224조(견적서의 제출요구)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17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사목·아목, 제218조 및 제219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17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계약

165)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타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의 기준·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회계규정시행규칙」은 국가계약법령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별도의 계약 기준·절차를 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되었으나 「회계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관련 기준·절차의 지체현상이 발생하여 법령이 정한 절차에서 벗어나 자의적 예산집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계규정시행규칙」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준용규정을 도입하거나 「회계규정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국가계약법령상의 각종 기준·절차를 기관 운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¹⁶⁶⁾: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63억 5,500만원 중 251억 3,300만원이 출연되고, 4억 8,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 3,6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809	25,809	546	-	-	26,355	25,133	486	736	25,327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의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장기근속자 및 정년(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총 1,4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166) 세부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 경상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목으로 포상금을 총 1,460만원을 집행하였음. 당해 포상금은 근속포상 및 정년(명예)퇴임포상 지급에 해당하며, 10년 근속자 22명에게 30만원씩 총 660만원, 20년 근속자 5명에게 40만원씩 총 200만원, 정년(명예)퇴임자 6명에게 100만원씩 총 600만원이 지급되었음.

○ 장기근속자 및 정년(명예)퇴임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포상규칙」 [별표 3] 167)에 따른 것임.

〈최근 5년 근속포상 및 정년(명예)퇴임포상 지급액〉

구분	근속포상			정년(명예)퇴임포상 (100만원)	지급총액
	10년 (30만원)	20년 (40만원)	30년 (50만원)		
2023년	660만원	200만원	-	600만원	1,460만원
2022년	690만원	400만원	-	800만원	1,890만원
2021년	330만원	80만원	-	-	410만원
2020년	180만원	40만원	-	800만원	1,020만원
2019년	270만원	400만원	-	200만원	870만원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경상운영비는 최대한 절감 집행하도록 하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167) [별표 3] <신설 2008.7.22., 2014.6.30> 부상 수여 기준표

포상 구분	부상 내역	비고
근속포상	- 10년 근속포상 : 온누리상품권 30만원 - 20년 근속포상 : 온누리상품권 40만원 - 30년 근속포상 :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정년(명예)퇴임포상	-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공적포상 및 우수포상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퇴직예정자 등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등 과도한 수준의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제3항도 동일하게 ‘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하여 장기근속자 및 정년(명예)퇴임자에 대한 포상금을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4. 산업연구원¹⁶⁸⁾: 일반사업 구조 조정 검토 필요(제도개선)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연구원” 사업은 국내외의 산업·기술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는 산업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48억 1,300만원 중 228억 3,200만원이 출연되고, 17억 7,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산업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산업연구원	22,408	22,408	2,405	-	-	24,813	22,832	1,775	207	24,965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산업연구원은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중국종합연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의 폐지·통합 등 구조조정이 요구됨.

- 2023년 산업연구원은 총 11개 24억원 규모의 일반사업을 수행하였음.

2023년 산업연구원의 일반사업 중 ‘산업경기 모니터링 및 예측과 빅데

¹⁶⁸⁾ 세부사업: 산업연구원(1535-301)

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운용' 등 3개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었 으며,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3년 7억 7,100만원이던 예산이 2024년 19억 2,700만원으로 증액되어 사업규모가 증가하였음.

- 한편,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중국종합연구' 등 6개 사업은 사업예산이 감소하였음.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은 2023년 1억 3,500만원이던 예산이 2024년 6,2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중국종합연구'는 2023년 1억 7,900만원이던 예산이 5,8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산업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 감	
			(B-A)	%
○ 일반사업비	2,439	3,556	1,117	45.8
·산업경기 모니터링 및 예측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운용	253	-	△253	△100.0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연구	62	-	△62	△100.0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발전전략 연구	48	-	△48	△100.0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135	62	△73	△54.1
·한국 경제의 산업 각 분야별 미래-경쟁력에 관한 연구	93	79	△14	△15.1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구축 사업	771	1,927	1,156	149.9
·동아시아 진출기업을 통한 공급사슬 분석	238	155	△83	△34.9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 공급망 종합연구	300	270	△30	△10.0
·한-아세안 정책연구협력센터 운영	-	745	745	순증
·중국종합연구	179	58	△121	△67.6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360	260	△100	△27.8
·한-인도네시아 산업혁신연구협력사업	-	1,525	1,525	순증

(자료: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은 산업연구원 「직제규정」¹⁶⁹⁾에 따라 본원

169) 「직제규정」 <별표 2>

연구지원 업무, 대중국 산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중국 현지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북경지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북
경지원에는 산업연구원 직원 1인(연구위원·북경지원장) 및 현지채용
인원 1인이 근무하고 있음.

-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예산은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
는데, 2024년에는 북경지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고정비 1억 4,100만
원¹⁷⁰⁾에도 미치지 못하는 6,200만원 수준의 예산만이 편성되었음.
-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2023년도 결산시 발생한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승인 후
임차료·수용비·전문가활용비 등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바,
2024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7개월을 연구기간으로 정하여 총
1억 3,000만원(임차료 6,600만원, 수용비 4,031만원, 전문가활용비
910만원 등)을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기
간이 2024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2025년 8월까지로 설정되는 구조
는 향후 적정한 예산 확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적립
금을 통한 재원 충당 관행의 반복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부서명 (하위부서)	영문명	업무분장
(북경지원)	Beijing Office	1. 본원 연구지원 업무 2. 대중국 산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MOU 체결기관과의 협력, 중국경제 모니터링 실시, BSI 업무지원) 3. 중국 현지 연구업무 수행

170) 사무실 임차료(6,900만원), 비정규직 인건비(3,192만원), 공공요금(108만원), 사무실·차량 관리비 등 수용
비(3,916만원)

〈최근 5년간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예산액	62	135	135	153	153
전년도 이월액	2	15	39	45	51
예산현액	64	150	174	198	204
결산액	-	148	159	159	159

(자료: 산업연구원)

- 한편 조직과 성과의 측면에서 당해사업을 검토하면, 북경지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1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중국산업경제브리프 발간, 연구교류 행사 개최 등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 및 확대가능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¹⁷¹⁾
- 조직 내 역할의 측면에서도 북경지원이 별도의 조직 및 일반사업으로 지속하기 위하여는 북경지사 고유의 목적과 역할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직제규정」에 따르면 북경지원의 업무분장 중 첫 번째 업무가 ‘본원 연구지원 업무’라는 점에서 일반사업으로서의 고유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북경지원의 「직제규정」 상의 두 번째 업무분장사항은 ‘대중국 산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인데 북경지원의 조직과 사업의 주요 목적이 연구업무의 직접 수행이 아닌 본원의 연구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유지 등의 연구지원사업이라면, 산업연구원은 관련 예산

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은 보고서 작성 등 기관 업무 협조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줄어드는 예산과 조직 축소 상태에서 선택과 집중의 노력과 같은 창의적 활동이 부족하며, 본원과 지원의 체계를 제도화하고 연구기획에 기여한 바 있으나 기존과 차별화되는 내용이나 새롭게 발굴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가 불분명함.

을 기관고유사업 내의 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5년간의 무유지기간이 적용¹⁷²⁾되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중국종합연구’ 예산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2024년 예산인 5,800만원은 2023년 예산 1억 7,900만원에 비해 32% 수준이며 2020년 예산 3억 5,000만원에 비해 17% 수준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중국종합연구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예산액	58	179	222	277	350
전년도 이월액	74	200	197	251	427
예산현액	132	379	419	528	777
결산액	-	305	220	331	526

(자료: 산업연구원)

- 2023년 ‘중국종합연구’ 예산의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중국 서부3성 지역과의 한중 산업협력 연구’ 등 3개 연구과제¹⁷³⁾에 총 1억 7,000만원이 집행되어 연구과제 1개당 평균 5,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음. 이를 고려하면 2024년 5,800만원의 예산은 1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창출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생각됨.

172) 일반사업이 기관고유사업을 전환된 경우, 사업계획 임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전환 후 5년간 의무유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p.25))

173) 비연구과제인 ‘중국 산업 연구 DB 구축’과 ‘중국종합연구일반’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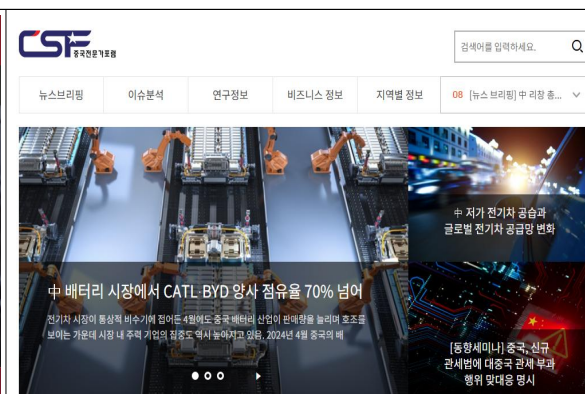
〈2023년도 중국종합연구 실적〉

세부연구과제명	결산액(백만원)
중국 서부3성 지역과의 한중 산업협력 연구	50
주요 산업의 한중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	68
중국 진출 기업 경기 조사	52
중국 산업 연구 DB구축(비연구)	22
중국종합연구일반(비연구)	113
합계	305

(자료: 산업연구원)

- 또한, 산업연구원의 ‘중국종합연구’ 세부과제인 ‘중국 산업 연구 DB 구축’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 운영’ 세부과제인 ‘중국전문가포럼(CSF) 콘텐츠 제공’은 중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제공하여 연구 및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으로 통합운영을 통해 상승효과(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포털사이트 비교〉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정보포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 나아가, 산업연구원의 ‘중국종합연구’ 2024년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67.6%(1억 2,100만원) 감액되었다는 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종합연구’ 2024년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3.6%(4억 7,100만원) 감액되었다는 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 운영’ 2024년 사업예산은 50%(1억 6,100만원) 감액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관련 연구사업의 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산업연구원은 출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을 위해 일반사업 중 지속가능성 및 성과창출가능성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의 폐지·통합 등 구조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¹⁷⁴⁾: 일괄적인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지급 부적절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3년 출연금 예산현액 149억 원 중 130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연도 잔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14,597	14,597	303	-	14,900	13,050	214	1,636	15,217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검토의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일괄적인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지급은 부적절하므로, 출장 여부 및 빈도 등 관련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원 차량유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자가차량 보유 및 운행자에 대하여 연구원 내 「자가운전차량유지비관리요령」¹⁷⁵⁾에 따라 자가운전차량

¹⁷⁴⁾ 세부사업: 정보통신정책연구원(1537-301)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 자가운전차량유지비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연구원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연구원 소속 부연구위원 이상 및 책임행정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액(월 20만원~30만원)¹⁷⁶⁾ 지급하고 있으며¹⁷⁷⁾, 2023년도에는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어 2억 4,035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년도 월별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지급 대상 인원 및 지급액〉

(단위: 원, 명)

지급년월		지급액	대상인원
2023년	1월	18,973,390	79
	2월	19,670,020	81
	3월	19,710,030	81
	4월	19,456,720	83
	5월	19,836,720	83
	6월	18,840,040	83
	7월	19,453,390	82
	8월	19,916,740	84
	9월	20,310,040	85
	10월	22,033,340	87
	11월	21,276,720	88
	12월	20,873,400	87
총합계		240,350,550	1,003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5) 제2조(지급대상) 차량을 구입하여 연구원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부연구위원 이상 및 책임행정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176) 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 월 30만원, 부연구위원 및 책임행정원: 월 20만원

177) 연구원은 본인 명의 차량 보유자 중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월 중 7일을 초과한 휴가·출장기간에 대한 자가운전차량유지비는 환수 조치한다고 설명함.

「자가운전차량유지비관리요령」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자가운전차량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표 제2호>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차량유지비의 계산 및 지급방법

가. 차량유지비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월 단위로 지급되며 자가운전 운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8일이상의 휴가자 및 8일이상의 출장자(해외출장자 포함)에 대하여는 월 중 7일을 초과하는 휴가, 출장기간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구원은 동 유지비 지급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위치(충북 진천), 다수의 정부 수탁과제 수행으로 인한 수도권 소재 유관기관으로의 출장 및 광역 교통 시설까지 이동 등으로 인해 자가 차량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모든 출장에 연구원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연구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차량 유지 경비 절감을 위하여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원의 지리적·업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자가운전차량유지비는 출장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성격임을 고려하면 일괄적인 지급 방식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자가운전차량유지비의 지급은 업무와 관련한 출장의 수행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바, 업무관련 출장수행 여부 또는 빈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출장 이력이 없거나 그 횟수가 극히 적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동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23년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수령자 국내출장 현황¹⁷⁸⁾〉

국내출장 횟수	인원	근거리출장 ¹⁷⁹⁾ 횟수 ¹⁸⁰⁾	인원
0회	8명	0회	19명
1~10회 이하	38명	1~10회 이하	26명
11회~20회 이하	17명	11회~20회 이하	3명
21회~30회 이하	12명	21회~30회 이하	6명
30회 이상	18명	30회 이상	39명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출 자료 재구성)

○ 참고로, 연구원은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교통보조비(월 10만원)를 편성·지급하고 있음¹⁸¹⁾.

□ 한편, 자가운전차량유지비의 수령자는 출장 시 업무용 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원의 「여비지급요령」에 따라 여비 지급 시 일비는 2분의 1 감액하여 지급하고 교통수단의 운임은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¹⁸²⁾,

178) 국내출장 횟수가 적거나 0회인 경우에도 근거리출장을 다수 수행한 사례도 있으나, A의 경우 2023년 국내출장 수행 이력이 4건, 근거리출장 수행이력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출장 빈도가 극히 적은 경우가 일부 확인되고 있음.

179) 「여비지급요령」

제15조(근거리출장) ① 근거리출장이란 동일생활권역(광역시를 포함한 시·군 단위)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하며, 다른 시·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당일 귀임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근거리출장으로 본다.

② 근거리출장의 경우 별도 여비의 구분없이 출장시간을 기준으로 정액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제4호>와 같다.

180) 연구원에 따르면, 근거리출장자의 경우 대부분 교통비 일부를 감액(50%)한 여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근거리출장시 자가차량 이용 여부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181) 다만, 자가운전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직원은 교통보조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수당지급요령」

제15조(교통보조비) 직원에게는 월 100,000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연구원에서 지원받거나, 자가운전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직원은 제외한다.

182) 제4조(일비 등 계산) ①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차량 또는 업무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12조(지급기준) ① 국내출장여비는 <별표 제4호>의 기준에 의거 해당 교통 수단의 운임,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다.

② 업무용차량 또는 업무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은 일비를 전액 지급하고 교통비를 대중교통(버스) 운임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여비지급요령」을 위반하여 여비를 중복지급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출장수행 여부 또는 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등 보다 면밀한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가용전차량유지비의 일괄적인 지급을 지양하고, 동 유지비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왜곡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해당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 통행료 등은 계산하여 전도한 후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및 관련 영수증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6. 한국노동연구원¹⁸³⁾: 이월을 통한 자체수입 초과분 직접사용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분석하고, 고용·노동·사회정책 개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7억 4,100만원 중 162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노동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 관 명	2023년								2024년 예 산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 산 현액	집 행 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추경							
한국노동연구원	16,286	16,286	455	-	16,741	16,268	152	322	15,84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 검토의견

한국노동연구원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수입을 임의적으로 동일사업 예산으로 이월하는 등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집행이 발생함.

-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사업(일반사업)은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교육연수과정 운영 등을 통해 고용노사관계 혁신을 이

183) 세부사업: 한국노동연구원(1543-301)

끝 각계 리더를 육성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7,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72	72	-	-	72	72	-	-	7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은 동 사업을 통해 ‘KLI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참가자들에게 일정액의 연수과정등록금¹⁸⁴⁾을 납부 받고 있으며, 이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체수입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자체수입을 포함한 편성·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예산)			집행액 (=결산)			초과 수입	비고
	출연금	자체수입		출연금	자체 수입	집행 잔액		
		당초 예산	전기 이월금					
2021년	80	147	22	80	126	43	-	집행잔액을 ‘22년 동사업으로 이월
2022년	80	138	43	80	172	9	38	집행잔액과 초과수입을 ‘23년 동사업으로 이월
2023년	72	105	47	72	152	-	40	초과수입을 ‘24년 동사업으로 이월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184) 2024년의 경우 개인당 530만원의 등록금이 책정됨(수업료: 430만원, 동문회비 및 기타: 100만원, 해외연수비 별도)

□ 한국노동연구원은 이에 대해 「경인사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상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수과정등록금 초과수입은 타 기타 수입 항목과 달리 수입이 해당사업의 특수성(예컨대 전체 등록생 수, 인당 등록금 액수 등)에 기반하여 발생하므로 직접경비¹⁸⁵⁾로 이월하여 편성·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원의 설명과 같이 동 연구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서는 자체수입 초과달성 등으로 발생한 결산 잉여금의 사용처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¹⁸⁶⁾ 자체수입 초과분 전액의 동일사업 직접 이월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총칙」 제7조¹⁸⁷⁾에서는 지출예산 중 ‘집행잔액으로 인한 잉여금’에 한정하여 이월을 통한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면 이를 연구개발적립금 등의 재원으로

185) 「예산총칙」 제5조(초과수입금의 사용 및 수입대응지출) 연구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능률제고를 위하여 자체수입이 당초 수입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수입금 범위내에서 필요한 직접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직접경비는 수입금액과의 연관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집행할 수 있으며, 인건비성 경비 및 경직성 경상비 목적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186)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기관의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선적립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 후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208),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경제·인문사회연구회, p60))

187) 제7조(예산의 이월) 지출예산 중 집행잔액으로 인한 잉여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것으로 부득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동 교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입 전액을 동일사업의 수입
예산으로 직접 이월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은 동 교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입분
을 예산집행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적립금 적립 등 자체
수입 초과분 사용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7. 한국직업능력연구원¹⁸⁸⁾: 일반연구사업과 연구지원사업 통합 발주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 교육훈련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2023년 출연금 예산현액 236억 3,700만원 중 230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연도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23,445	23,445	192	-	23,637	23,096	182	359	22,543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 검토의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정보화사업 운영시 연구지원사업과 일반사업의 구분 없이 일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사업별 구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188) 세부사업: 한국직업능력연구원(1549-305)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정보화 관련 사업으로 ‘HRD웹정보서비스 생성·운영사업’,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화사업’,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사업’ 및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및 기간계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등 총 4개의 연구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023년 정보화 관련 예산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예산총액	집행액			잔액
		출연금	자체수입	합계	출연금	자체수입	합계		출연금	자체수입	합계	
연구지원	HRD웹정보서비스 생성·운영사업	40	-	40	16	-	16	56	55	-	55	1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화사업	525	44	569	31	44	75	644	556	69	625	19
일반사업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90	-	90	-	-	-	90	90	-	90	-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및 기간계시스템 운영지원	144	-	144	1	-	1	145	144	-	144	1
합계		799	44	843	48	44	92	935	845	69	914	21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동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화 관련 사업 중 아래의 3개(연구지원사업 2건, 일반사업 1건) 사업은 통합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정보화 관련 사업 통합 발주 내용〉

구분	사업명	용역(사업) 내용
연구 지원	HRD웹정보서비스 생성·운영사업	기관 대표 홈페이지 Hardware, System Software, 개발부문 (국·영문 홈페이지, 홈페이지 관리지 시스템)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화사업	통합정보시스템 Hardware, Network, System Software, 개발부문 (포털, MIS, 연구관리)
일반 사업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 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전사적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Hardware, Network, System Software 부문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와 같은 사업의 통합발주를 통한 운영은 사업자와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관리 및 발주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유지보수의 안정성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일반사업’의 경우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사업인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사업을 연구지원사업과 같이 통합 발주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사업 정의〉

구 분	내 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 (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전체로 심의를 받는 ‘기관고유사업’과는 달리 ‘일반사업’은 매년 개별 연구과제마다 그 타당성을 심의받아 특정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인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시스템 운영비의 재원으로 통합하여 집행하는 경우 동 연구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업 성과와 그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렵게 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수준의 적정성 또한 판단하기 어려워지게 됨.

□ 따라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통합발주 시 일반사업을 제외하여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¹⁸⁹⁾: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수립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3억 9,000만원 중 160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16,039	16,039	351	-	16,390	16,078	312	-	16,087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검토의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여러 연구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결과보고서에 행사의 논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아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일반사업인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은 기존 양성평등 정책 평가 및 혁신 전략 모색, 양성평등 관련 국정과제 추진

189) 세부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1547-301)

을 위한 전략 의제 개발, 다양한 국가기관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3억원이 편성되어 2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년도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300	300	-	-	300	293	7	-	98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동 연구사업의 세부과제로 개원 4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성평등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는 ‘개원 40주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음.

<개원 4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20일 오후 2시 ◦ 장소 :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제: 변화하는 환경과 성평등 정책의 미래 ◦ 주요 내용 - 연구원 개원 4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성평등 동향과 전략 공유 및 향후 해결 과제와 방안 모색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당초 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238만원을 초과한 6,238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사 관련 비용을 일반연구사업인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외에도 연구지원사업(국제협력활성화 사업) 등의 연구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였음.

〈개원 40주년 국제학술회의 행사 관련 편성·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편성액 ¹⁹⁰⁾	집행액	비고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50,000	49,500	행사용역비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	2,500	답례품(2,200) 대기실 추가 임대(220) 행사 관련 직원 출장(80)
국제협력활성화 사업	-	8,964	자료번역, 통역 및 녹화 업로드(4,388) 자료집 인쇄(1,089) 답례품(3,487)
기타운영비 외 28개 사업	-	1,420	행사 관련 직원 출장(1,420)
합 계	50,000	62,384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정부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출연연구기관은 예산집행에 있어 국가회계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또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국가재정법」 제45조¹⁹¹⁾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사업을 위한 경비를 별개의 연구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그 재원이 된 연구사업의 목적과 연관성이

190) 2023년도 각목명세서상 편성된 내역

19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부족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고,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동 연구사업의 목적이나 관련된 예산의 전체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한편, 동 국제 학술회의의 결과보고서는 ① 개요(행사 개요, 연사 소개), ② 분야별 세부운영(연사케어, 웰컴디너, 셋팅, 참가결과, 세션 운영, 기타), ③ 디자인 및 홍보(디자인, 영상, 언론보도), ④ 기타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 학술회의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제문과 토론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도 작성되어 있지 않아 학술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성과들을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음.

○ 또한, 국제 학술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발제자 1명을 제외하면 발제자 및 토론자 모두 국내연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 학술회의와의 차별점도 찾기 어려움.

□ 따라서, 향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별 연구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연구사업의 예산을 활용한 연구사업 수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성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¹⁹²⁾: 통신비 지급 부적절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사업은 과학기술 및 관련 혁신에 대한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77억 5,300만원 중 168억 2,1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8천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17,472	17,472	281	-	17,753	16,821	552	380	16,914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검토의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 수행상 필요를 검증하지 않고 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신비를 지급하였음.

192) 세부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1532-301)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3년도 경상운영비의 공공요금 목에 전신전화료 이동전화사용료로 2,16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부서장 휴대전화 및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집행됨.

〈2023년도 기관운영비 중 공공요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목	산출근거		산출액
공공요금	우편 및 통신요금	1. 우편료 문서발송 5,000원*350부*2회	35
		2. 전신전화료 이동전화사용료 60,000원*30대*12월	21,600
		3. 단체문자발송료 이동전화사용료 100원*165명*20회	330
	기타 공공서비스 요금	150,000원*12월	1,800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동전화사용료를 연구원의 ‘공무사용 휴대전화 지원 및 관리기준’에 따라 ①기관장, ②보직자인 부서장 및 파견연구관, ③기관장 차량 운전·수행을 업무로 하는 자에 대한 통신비로 지급하였다고 설명함.¹⁹³⁾

193) ‘공무사용 휴대전화 지원 및 관리기준’

제2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무사용 휴대전화 및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관장
2. 보직자(부서장, 파견연구관)
3. 기관장 차량 운전·수행을 업무로 하는자

제3조(지원기준) 공무사용 휴대전화 및 통신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공무사용 휴대전화 및 통신비 지원기준

〈통신비 지급내역〉

(단위: 원)

연도	통신비 지급대상 인원수	지급금액
2019	29	16,503,860
2020	28	16,283,307
2021	34	17,822,445
2022	34	20,158,593
2023	34	20,979,408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통신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상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통신비 외의 요금(단말기할부금, 소액결제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임원인 원장에 대해서는 단말기와 휴대전화 사용료 실비를 상한 없이 지급하였고, 부서장, 파견연구관에 대해서는 보직의 성격 및 업무 수행상 필요를 검증하지 않고 매월 통신비 5만원을 지급하여 통신비를 집행하였음.

□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사용료 실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신비를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지원대상	지원범위
기관장	○ 통신비: 전액 지급 ○ 단말기 지원: 대상
보직자 (부서장, 파견연구관)	○ 통신비: 5만원/월 ○ 단말기 지원: 비대상
기관장 차량 운전·수행 직원	○ 통신비: 5만원/월 ○ 단말기 지원: 비대상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지출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외에 보직자 등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통신비 지급 대상 업무 형태, 실제 업무용 전화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통신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통신비 지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 한국환경연구원¹⁹⁴⁾: 계약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기관 평가 인센티브 사용 지양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2023년 출연금 예산현액 236억 8,800만원 중 226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으며, 7억 6,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환경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2022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3,380	23,380	308	-	23,688	22,626	293	269	21,745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2) 검토의견

한국환경연구원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금액을 국가 계약법령 및 예산운용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 한국환경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2년 연구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금액(1억 745만원)을 활용하여

194) 세부사업: 한국환경연구원(1554-301)

2023년도에 세 차례 단체 플로티룩(Floaty Look) 구매 관련 예산을 집행하였음.¹⁹⁵⁾

〈2023년도 플로티룩 구매 관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적요	지출일자	지출금액
경상운영비 수용비	단체 플로티룩 구매	7월 20일	22,080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플로티룩 구입 대금 지급	8월 1일	10,000
	플로티룩 구매	8월 24일	57,968
	합계		90,048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7월 20일에는 A업체에 2,208만원을 지급하였고 8월 1일에는 B, C 두개의 업체에 500만원씩을, 8월 24일에는 B, C 업체에 최종 정산금액 31,471,480원과 26,496,100원을 지급하여 해당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도 플로티룩 업체별 지급내역〉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1차(7월 20일) 집행액	22,080,000원		
2차(8월 1일) 집행액		5,000,000원	5,000,000원
3차(8월 24일) 집행액		31,471,480원	26,496,100원
합계	22,080,000원	36,471,000원	31,496,100원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195) 얇고 시원한 옷차림이라는 뜻으로 시원하고 가벼운 쿨맵시 근무복을 제공함으로써 체감온도를 낮춰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냉방 및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하여다고 설명함.

□ 한국환경연구원은 플로티록 구매를 위하여 A업체(22,080,000원), B업체(36,471,000원), C업체(31,496,100원)와 3건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3건 모두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임에도 일반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계약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 사항을 두어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6) 및 동법 시행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197)을 위반한 집행으로 보임.

□ 또한, 1차에는 A업체와 견적서를 기준으로 400장의 근무복 상의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이후에는 B,C업체와 ‘물품구매협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2차에는 선금 각 500만원씩을, 3차에는 실제 직원이 방문하여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대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음.

○ 한국환경연구원이 B, C업체와 체결한 협약서는 협약기간, 물품의

196)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197) 제5조 (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할인율, 지급대상 직원, 대금지급 방법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등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하도록 규정¹⁹⁸⁾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로 보기 어려움.

〈2차 및 3차 플로티록 협약 및 집행내용〉

구분	B업체	C업체
협약기간	7월 14일~8월 15일	7월 14일~8월 15일
협약조건	정가의 20~40% 할인금액으로 판매	정가의 10~20% 할인금액으로 판매
1인당 배정금액	250,000원 *근무기간별 상이	250,000원 *근무기간별 상이
구매인원	154명	131명
미사용금액	28,520원	3,900원
최종 집행금액	36,471,480원	31,496,100원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 그리고 2차, 3차 집행 내역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통상적인 물품 구매계약에 따라 특정 물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지급한 방식이 아니라, 협약기간 동안 한국환경연구원이 교부한 인수증을 직원이 업체에 제시하고 물품을 구매하면 배정금액 범위 내 금액을 한국환경연구원이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198)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연구기관 인센티브는 경상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지침에서 경상운영비는 ‘기념품 지급시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지급하여 사실상 급여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일정 금액 내에서 협약 업체의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 가능하도록 한 인수증은 일종의 상품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동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인센티브 사용에 있어서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법령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정 절차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음.

